

# 남북한 농수산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 대책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김 영 훈	연구 위 원
남 민 지	초청연구위원

## 연구 담당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김영훈	연구위원	제2장 집필
남민지	초청연구원	자료수집, 정리

## 머 리 말

---

최근 20여 년 동안 남북한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중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으며 조만간 제1위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국제 지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인적 왕래와 사회·문화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합영이나 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제도나 경험 환경이 미비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경험은 대북정책의 핵심인 상생과 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험을 통해 남북한은 상생과 공영을 이룰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수산 분야의 경험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경험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남북한 경험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제도적 미비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제시코자 하였다. 농수산 분야에서 실제 경험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을 만나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경험을 제약하는 요인 중에는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의 문제, 국제 문제도 존재한다. 북한의 문제와 국제 문제는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점차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내부의 문제도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이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준 기업인, 시민단체, 정

책관계자,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남북  
한 사이의 경협을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 요 약

---

이 연구는 남북한 사이의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의 주체인 기업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정비, 경협기반 및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며 남북경협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농수산 분야의 경협은 초기에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협 환경은 열악하고 새로이 구축하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는 남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당국자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책방향을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남북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경제 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은 331건이며 이 중 11건은 승인이 취소되었다. 승인을 받은 사업 중 259건은 개성공단 사업이며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77건이다. 이 중에서 현재 유효한 사업은 50여건 정도이다. 지금까지 농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은 총 21이며 이 중 4건은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 17건만 유효하다. 이 중 개성공단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4건이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10건도 되지 않는다.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남북한 당국은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마련하고 2003년 8월 18일부터 효력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

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청산결제합의서’) 등 4개의 합의서가 있다. 이러한 합의서가 채택되기 전까지만 해도 남북한은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각 합의서에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도 실행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실제 경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개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은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등 다수의 대외경제 법제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이러한 법제는 외국에만 적용될 뿐 남한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에 대해서도 외국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더욱 호혜적인 수준의 대외경제 법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 이외에도 농수산 분야의 남북경협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다. 농수산 분야는 자연환경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이나 시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기 힘들다. 또한 농수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큰 데 비해 가격이 싸며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농수산 분야의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교역이나 경협을 추진할 때 다른 분야보다도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경협사업자가 당면하는 현실적인 제약은 주로 북한 측의 문제에 기인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 면도 없지 않다. 경협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사교환을 하는 초기 단계부터 통일부로부터 사업자승인을 받는 과정, 북측 상대방과의 가격 결정, 방북, 물류, 생산물 판매, 대금결제, 사업 외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어려움이 존재한다. 북한의 경제 환경이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경협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한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경협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요인이다.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농수산 분야의 협력사업도 적지 않다.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비롯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회의를 통해 남북한은 농수산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당국간 합의된 내용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부터 실행에 옮기되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당국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지만 가능하면 민간기업인이 중심이 되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생과 공영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합치된다. 민간의 경험은 경험사업자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관여하는 협력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경제성 이외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 경험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면 무리하게 경험을 추진하기 보다는 먼저 지원 성격의 사업을 지속하다가 점차 계약생산 또는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성격의 협력은 장차 경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과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농수산 분야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초를 긴 안목에서 설정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은 상생과 공영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두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농수산 분야의 협력은 우선 협력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협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형태, 추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 분야의 사업과는 달리 농수산 분야는 자연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수산 분야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경험이 성공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계절적으로 생산되며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품질이 쉽게 손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 때 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물류 및 유통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경험이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어려우며 남북한 당국자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북핵 문제는 경험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6자회담 참가국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이의 경험이 활성화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에 북한지원협력기금을 설치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 ABSTRACT

## Policy Issues on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uggests strategies for activating cooperation. To do so, the government's role is emphasized because there are more important things such as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system adjustment, and creation of cooperative foundation and circumst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come closer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progressed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the 6·15 declar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had many difficulties in the early days but it has settled down since the mid-2000s. So far, 21 cooperation plans have been approved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and among the 21 cooperation plans, four of them has been canceled and the rest of them is valid for now.

South and north Korea have already agreed to cooperate in many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related businesses. In addition, they decided to do various business cooperations through the first meeting of th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Committee in 2005, and they have also agreed on their future cooperation at the 2007 Inter-Korean summit meeting. However, there have not been any progress so far and the future is unclear.

The South and North announced four Agreements o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a way to stabiliz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nd it has become officially effective since August 2003. But there are no detailed guiding principles, so the performance of the agreements is very limited. To revitalize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contents of four Agreement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more concrete. Also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North should change. Especially, the Investment Law for Foreigners, which is applied only to foreign countries, needs to be applied to the South equ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must be fundamentally stable and to do that, consistency of the policy is required.

We should be ready to carry out any concrete plans in cas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improve. If private enterprises lead the economic cooperation, it would be accorded with the government policy, which has been mutually-beneficial and co-prosperous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business under unfavorable environment should be carried out supportively at first and move into an investment business or a contract production gradually. Supportive businesses, which ar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should have more interests in guiding the North. They will have to make the North turn its eyes to reform and open policy for the future.

South Korea should set policies for the North in long-term perspective and it should be carried out consistently and continuously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ic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The purpo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settled down for the fixed peace of Korean peninsula and the mutually-beneficial and co-prosperous inter-Korean relationship.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is capable of checking up the original place of products because they are produced with materials from the North. The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successful when the safety system is prepare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global environments.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related to inter-Korean cooperation very deeply, so the participants of six-party meeting will have to show their efforts for revitalizing the South and North economic cooperation. From now on, it is the priority for the North to jo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become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Recently, South Korea's government made a Fund fo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t IBRD and it will be a good example to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orth.

Researchers: Kwon, Tae-Jin, Young-Hoon Kim and Min-Ji Nam

Research period: 2008. 7. - 2008. 12.

E-mail address: kwontj@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내용 .....	2
4. 연구범위 .....	3
5. 연구방법 .....	5
6. 국내외 연구동향 .....	6

### 제2장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경험정책 방향

1. 대북 정책 기조 .....	17
2. 농수산협력의 추진 원칙과 전략 .....	21

### 제3장 농수산 분야 경험 추진 현황

1. 경험사업 추진 현황 .....	23
2. 한국의 경험 관련 법, 제도 현황 .....	26
3. 북한의 경험 관련 법, 제도 현황 .....	30

### 제4장 경험사업 활성화 저해 원인 분석과 과제

1. 농수산 분야 경험사업 추진의 문제점 .....	36
2. 경험 기반 및 제도 .....	38
3. 남북경협의 저해 요인 분석 .....	43
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46

## 제5장 농수산분야 경협사업 추진 대책

1.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농수산 분야 협력 합의 내용 ..... 49
2. 당국간 합의된 협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대책 ..... 53
3. 새로이 추진할 경협사업의 발굴 ..... 75
4. 경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과 지원 방안 ..... 89

## 제6장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 105
2. 남북경협의 원칙 ..... 107
3. 농수산 분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략 ..... 109
4.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12

- 부록 1: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합의서 ..... 126
- 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 128
  - 3: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 130
  -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 132
  -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141
  - 6: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146
  - 7: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 149
  - 8: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합의서 ..... 151

- 참고 문헌 ..... 154

## 표 차 례

---

### 제2장

표 2- 1. 농수산협력의 추진 단계 .....	22
----------------------------	----

### 제3장

표 3- 1.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 추진 현황 .....	25
---------------------------------	----

### 제4장

표 4- 1. 남북경협 저해요인 .....	43
표 4- 2.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	47

### 제5장

표 5- 1. 남북 당국간 농업분야 관련 회의 .....	50
표 5- 2. 남북 당국간 수산분야 관련 회의 .....	52
표 5- 3. 품목별 지원 기준 .....	60
표 5- 4. 채종농장 지원 품목 및 소요 .....	60
표 5- 5. 2개의 시범농장에 대한 종자가공시설 지원 규모 .....	61
표 5- 6. 남북한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협력사업 단계별 추진 방향 .....	63
표 5- 7. 유전자원저장고 사양 .....	64
표 5- 8.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자금별 지원조건 .....	93
표 5- 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북지원 3단계 .....	93
표 5-10.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 .....	94
표 5-11. 교역손실보조의 종류 .....	96
표 5-12. 경제협력손실보조의 종류 .....	97
표 5-13. 농업분야 EDCF 지원자금 .....	100
표 5-14. 청산결재거래 합의내용 .....	103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1. 경제교류협력의 분류 .....	4
--------------------------	---

### 제5장

그림 5-1. 양돈사업 체계도 .....	55
그림 5-2.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구성안 .....	71
그림 5-3. 남북한 잠사협력 추진 전략 .....	82
그림 5-4.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대출절차 .....	102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필요성

-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은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역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를 동반한 민간차원의 경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지금까지 추진된 경협은 개성공단사업 등 일부 대형 국책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차원의 소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10.4 정상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정부 및 민간차원의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미진한 실정이다.
-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의 틀을 조정하되 실용과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그 동안 농수산 분야의 경협사업이 여러 건 추진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조금씩 활성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점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경우 향후 남북한 경험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북 경험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에는 경험기반의 불안정, 각종 제도의 미비, 경험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 부족, 국내외 환경 등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이들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농수산 분야의 경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향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2. 연구 목적

- 남북한 사이의 농수산 분야 경험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경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 부수적인 목적은 향후 남북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농수산 분야의 경험사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3.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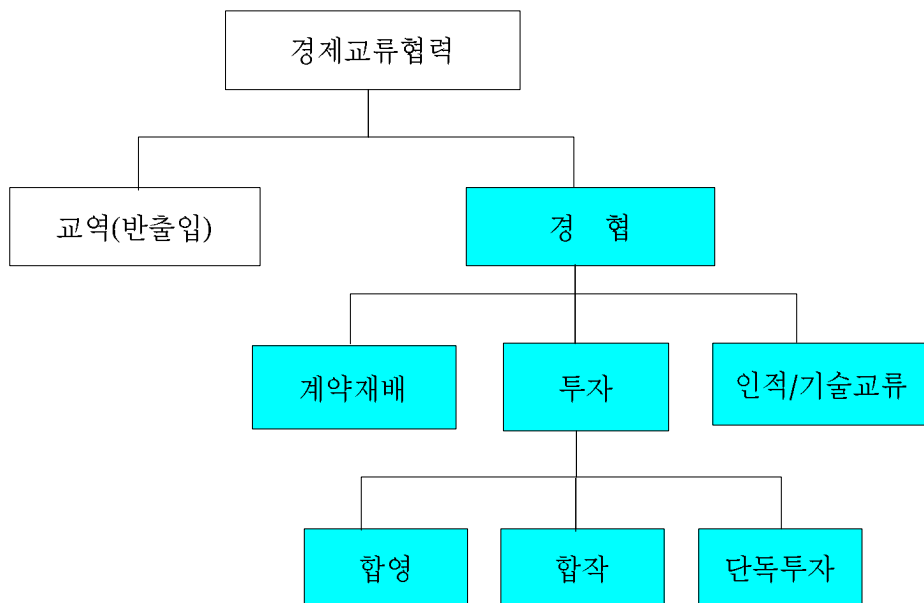
-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경협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 대북 정책 기조
  - 경협사업 정책 방향
- 농수산 분야의 남북한 경협사업 추진 실태
  - 경협사업 추진 현황
  - 남한의 경협 관련 법, 제도 현황
  - 북한의 경협 관련 법, 제도 현황
- 경협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과 과제
  -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 추진의 문제점
  - 경협기반 및 제도
  - 남북경협의 저해 요인 분석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의 추진 대책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
  -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협력사업 내용
  - 당국간 합의된 협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대책
  - 새로이 추진할 경협사업의 발굴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과 지원 방안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 남북경협의 원칙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

#### 4. 연구범위

## ○ 경제교류협력의 개념

- 경제교류협력은 크게 교역과 경협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1>.
- 교역은 물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지만 경협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인적교류, 기술교류 등 제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 위탁가공 또는 계약재배는 일반적으로 교역에 포함시키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투자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경협으로 분류하는 것이 관행이다.
- 이 연구에서는 계약재배 및 투자사업(합영, 합작, 단독투자, 연구개발), 인적 또는 기술교류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지만 남북한의 관련 제도를 검토할 때는 교역과 경협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그림 1-1. 경제교류협력의 분류



### ○ 투자의 분류

- 투자에는 자본의 투입과 이익분배 형태에 따라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이 있다.
- 합영은 남북한이 공동투자, 공동경영을 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한다.
- 합작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측이 단독경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지분을 상환 또는 이윤을 분배한다.
- 단독투자는 남측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한다.

## 5. 연구방법

### ○ 문헌조사

- 남북한의 경협 관련 제도 검토
- 농수산 분야 경협 추진 실적
- 기 추진된 경협사업의 성과

### ○ 국내외 조사출장

- 경협 추진 관련 기관 조사 출장
- 경협 추진 기업체 조사 출장
- 개성공단 주변지역 조사출장

### ○ 대내외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 국내외 북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원내외 농업 및 북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6. 국내외 연구동향

### 6.1. 남북한 경험 제도 연구

- 조동호. 2001.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대북관계와 대내관계로 나누어 예측 가능성, 지속성, 효율성 측면에서 제시한다.
  - 대북관계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제의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며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선언할 것을 주장한다.
  -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환결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남북경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육상운송로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 대내관계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대북경제정책이 경제정책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경분리원칙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정책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관련 기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 최수영 외. 200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통일연구원.
  -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는 남북한이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
  - 제도적 문제 이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물류비용,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북한제품 판매시장의 한계, 경협 추진절차의 복잡성 등 미시적, 실무적 차원의 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동균. 2002.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북경협 합의서가 남북 사이의 최초의 조약이라는 법적 성격을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WTO 협정상 의무면제를 받거나 자유무역지대 설립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남북경협 합의서의 후속 작업으로 원산지확인합의서와 지적재산권보호 합의서의 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 남성욱. 2003.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목적세 신설, 정부의 장기 국공채 발행, 남교 교류협력사업자의 기금 출연,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기금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스, 복권 발행, 국제권소시업 구성 등을 제안한다.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사업의 가변성 측면에서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
- 이기희. 2003.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제 현황을 소개하고 남북한 사이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최승환. 2005.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와 남북경협을 위한 운영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1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 남북경협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의 내용과 향후 남북경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 이종근. 2006. “남북경협을 위한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경제 Briefs」 Vol. 4, 현대경제연구원.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서 남북경협사무소의 활용 방안, 남북경협 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경추위의 운용 방안, 손실보조제도의 개선, 남북 당국간 이미 합의한 경협 관련 제도의 구체화 등을 제시하였다.
- 김영운. 2006. “최근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 정비의 의미와 남북경협.” 「통일경제 Briefs」 Vol. 6. 현대경제연구원.
-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는 경협 관련 법제의 내용과 배경,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정비해야 할 법제의 내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김광수. 2007. “남북상사중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북상사중재제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도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방안과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주진열. 2008. “남북경제협력의 국제법적 측면: 법과 정치.”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국제법적 쟁점을 재조명하고 풀어야 할 국제법적 문제를 법적 논리로 제시하였다.
  - 법적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남북한의 진실한 해결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 남북한 경협 제도 관련 연구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문제점 위주로 이슈만 제시할 뿐 체계적인 연구 성과는 미흡하다.

## 6.2. 남북한 농수산 분야 경협 실태 파악

- 김영훈 외. 1999. 「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남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지원, 교역, 경협을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정정길 외. 2000.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장 추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북한의 농업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범사업은 단순히 물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필요한 인력의 교류, 생산물의 처리 등 영농과 관련된 종합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김운근 외. 2004.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모델 개발 연구」.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 남북한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사업으로 시설채소, 유기질비료, 잡곡류 및 특용작물 생산, 종자 생산 등을 제시하였다.
  - 향후 남북한 협력은 대규모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한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남성욱. 2006.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협력 방안.”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 북한 수산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남북 수산협력을 위해 제1단계로 공동어로를 추진하고 바지락 종패자금을 지원하며 제2단계로 북한의 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박수리소 및 종합유통가공단지 조성, 러시아 해역 등 제3국 어장의 공동 진출, 제3단계로 동서해안 공동자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 김영훈 외. 2007.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북한 경협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은 남한이 매년 일정량을 꾸준히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품목, 북한 경제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 향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 설비투자를 비교적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투자협력사업 형태, 농자재 공급만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계약재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재배 대상 품목은 콩, 팥, 녹두, 누에고치, 인삼 등이며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품목은 양돈, 양계 등이다.
  - 농업투자를 특구와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 지금까지 농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실태와 평가 관련 연구는 주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단체의 지원, 농수산물 교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 6.3. 경험 관련 문제점 해결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고재모 외. 1999. 「남북한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분야의 계약재배 실태를 파악하고 곡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한약재, 잡사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향후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계약재배 운용 방향과 원칙, 추진전략,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 조영기. 2001.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험활성화의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5 no. 2. 북한연구학회.
  -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 폭과 방식, 속도 등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일관성 유지, 경험 추진기구의 상설화, 경험관련 4대 합의서의 이행, 경험관련 업무의 단일 창구 설치, 경험의 예측가능성 제고, 위험을 관리할 보험 상품의 개발, 해상운송체

계의 정비와 육로운송체제 확립 등이 필요하다.

- 최수영. 2001.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통일연구원.
  -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북 3성의 변경지역과 단둥, 신의주를 협력의 거점을 육성한다.
  - 러시아의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은 TSR-TRK 철도연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을 남북한 경협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일 수교회담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주성환, 조영기. 2002. “남북한의 산업별 경제협력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vol. 6 no. 1. 북한연구학회.
  - 남북한 경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통일 지향적 경제협력,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을 발견하기 어렵다.
  - 그러나 남북한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직적 분업을 통해 상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동명환. 2003.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환경」 연구보고서 2003-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탁가공, 교역, 투자협력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 중소기업은 남북한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열악한 인프라, 경협을 위한 시스템의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 경협사업 영역의 제약, 남북경협 정책지원제도의 미비로 인해 경협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북 진출 전략 수립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자기진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 심지홍, 김강식. 2003.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경상논총」 제28집. 한독

경상학회.

- 정부는 남북경협을 제도화와 경협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민간의 경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프라와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민간기업은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익성에 바탕을 둔 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이승철. 2003.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vol. 27 no. 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남북경협에 대해 남북한은 본질적인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 남한은 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 반면 북한은 체제수호적인 입장에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 남북경협의 이처럼 남북한 사이의 인식차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입각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양문수. 2005.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9 no. 2. 북한연구학회.
- 남북경협이 확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의 경협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향후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개발을 위한 남북경협의 역할 정립, 둘째, 새로운 경협의 방식 개발, 셋째, 한국의 대북 경협 정책에 대한 재검토, 넷째, 남북경협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와 자원조달, 다섯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여섯째, 국내 이해당사자의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권태진 외. 2006. 「대북 잠사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북한 잠사협력은 지원, 교역, 경협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 최종 목표인 경협을 위해서는 먼저 지원 형태로 시작하여 계약생산, 위탁가공사업, 교역, 투자 등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북한과의 계약생산은 잠견, 생사, 잠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며 투자 사업으로 제사 또는 견연사 공장을 건설하여 계약생산에 의해 확보된 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영훈. 2006.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vol. 10 no. 2. 북한연구학회.
  - 남북경협의 현황과 특징, 남북경협의 결정요인과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을 평가하였다.
  -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격차 때문에 일반무역보다는 위탁가공무역이나 투자의 잠재적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경협은 북한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남북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고 북한의 식량난, 외화난 등을 해소함으로써 북한의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 조영기. 2006. “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 방안과 과제.” 「통일경제」 vol. 9. 현대경제연구원.
  - 남북간 청산결제제도가 도입되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예상된다.
  - 긍정적 효과로는 직접교역 비중의 증가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금융비용 등 거래비용의 감소, 남북교역의 투명성 강화, 직접대금결제제도의 구축, 개별 기업의 거래 안정성 제고, 남한 기업의 상업적 반출 증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북한의 현금 선호현상으로 인해 청산 잔액이 장기

차관으로 변질될 가능성, 청산 잔액을 물품으로 정산할 때 물품 결함에 대한 클레임 처리의 곤란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남북한 청산결제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각종 합의사항의 실천과 함께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해결을 통한 유무형의 거래비용 절감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청산결제제도가 실행되려면 남북한 교역규모, 품목, 수량, 가격, 수송방법 등에 대한 무역협정 및 무역의정서를 체결하고 남한의 반출 증대에 대비하여 손실보조의 적용 범위 확대와 반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권영경. 2007. “북중 경제협력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본 남북경협의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11 no. 1. 북한연구학회.
- 북중 경제협력은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정상적인 국제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 남북 경협은 북중 경협과 경쟁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양문수. 2007.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국토」 vol. 311. 국토연구원.
- 남북경협은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워주었으며 북한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했으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남북한 정치, 군사적 갈등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도 수행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사업의 불안정성과 수익성의 미확보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앞으로 북미관계의 개선 등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변화되면 남북경협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변화가 더욱 중요하며 이는 남북경협이 남북한 경제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

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상만. 2007. “6.15선언 이후 남북 경협현황, 경협기금 운용평가 및 정책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11 no. 1. 북한연구학회.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실태,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 ☞ 남북한 경제협력 일반의 경협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대책을 소상히 제시한 연구는 드물고 농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여러 형태의 후속 회담을 통해 다수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 2 장

---

###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경협정책 방향

#### 1. 대북 정책 기조<sup>1</sup>

##### 1.1. 비전과 목표

-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은 상생과 공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
  -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하

---

1 이 절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2008)와 통일연구원(2008)을 많이 참고하였다.

고 발전의 길로 나서야 한다.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경제회복과 북한 주민의 행복도 보장받을 수 있다.
-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공동체 형성
  - 북한의 발전과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공동체 형성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한다.
-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 인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한다.
  - 한반도의 평화구조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안보체제의 구축,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 1.2. 추진 원칙

- ① 화해와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실용과 생산성을 추구한다.
-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간다.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국민이 원하는 정책,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 정책, 북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②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한다.
- 북한 핵을 조속히 폐기하고 내실 있는 대화를 추진한다.
  - 접근방식은 현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
- ③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를 제공한다.
  -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에게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 ④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한다.
-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도록 한다.
  -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 1.3. 추진 과제

- 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
  - 필요한 경우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한다.
  - 상호 존중하고 비방을 금지하는 등 회담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쌓아나간다.

- ②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간다.
- 남북회담 및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 북핵문제 해결 진전 과정에서 경제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한다.
  - 남북관계가 6자회담 진전을 지원하고, 6자회담의 진전이 남북관계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룬다.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한다.
  -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공고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확고히 유지하여 군사적 안정성을 지켜나간다.
- ③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실현한다.
- 남북간 산림분야 협력, 농수산협력, 자원개발 협력 등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우리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한다.
  - 대북투자사업 등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경협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 현재 진행 중인 경제협력사업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면서 추진한다.
  - 3통 문제와 신변안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남북 당사자간 분쟁 해결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남북경협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
  - 새로운 경협사업은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 새로운 민간 경제협력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 비핵·개방·3000의 실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실현한다.
- ④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남북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 나간다.
  - 민간의 교류를 적극 지원한다.
  - 사회·문화교류를 내실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화 기틀을 마련한다.
- ⑤ 인도적 문제의 시급히 해결한다.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고라는 관점에서 우선 해결한다.
  -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추진한다.

## 2. 농수산협력의 추진 원칙과 전략

- 추진 원칙
  - 협력사업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 협력 성과가 지속되도록 물질 기반과 상업적 협력기반을 조성한다.
  - 협력 당사자의 능력을 배양한다.
- 추진 전략
  -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북측 상대방에 대한 영농자재 추가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한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농수산협력은 남북 관계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표 2-1>.

-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도적 지원이나 중소규모의 농업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북핵 불능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합의 이행이 가시화되면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수산물의 교역 확대와 함께 상업적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상업적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농업기반 및 산림복구, 농촌생활기반 복구를 적극 지원한다.

표 2-1. 농수산협력의 추진 단계

단 계	북한 및 국제 환경	추진 내용
1단계	현재 상황 지속	○ 인도적 지원 및 중소규모 농업협력사업 지원 - 식량 및 비료 지원 -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 지원 - 시범영농단지 조성 협력사업 - 전문가 및 농업과학기술 교류
2단계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해제	○ 개발협력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 복구 시범사업 - 산림황폐지 복구 시범사업 ○ 상업적 협력사업 확대 -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분야 협력 ○ 농수산물 교역 확대
3단계	북핵 불능화 완료 개혁개방 이행	○ 농업기반 및 산림 복구사업 ○ 농촌생활기반 복구사업 ○ 민간의 상업적 협력사업 본격 추진

## 제 3 장

### 농수산 분야 경협 추진 현황

#### 1. 경협사업 추진 현황

- 정부는 2008년 10월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일부를 개정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만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규정 개정에서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마련하였다.
  - 관련 규정의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 2008년 7월 말 현재 민간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건수는 363건이며 이중 15건은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되었다.<sup>2</sup>

- 경제 분야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 중 협력사업 승인은 받은 건수는 331건이며 이 중 11건은 취소되었다.
  - 현재 승인된 협력사업 중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259건이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승인 건수는 77건이다.
  - 개성공단을 제외한 협력사업자 중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유효한 사업은 총 50건이다.
-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농수산 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모두 받은 것은 총 14건이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사업은 10건 미만이다.
- 지금까지 농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건수는 21건이며 이 중 국제옥수수 재단,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태영수산-LG상사, 상하씨엠 등 4개 사업자는 2008년 4월 21일부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이 모두 취소되어 현재 17건만 유효하다<표 3-1>.
  -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농수산 분야에서 현재 유효한 경협사업은 14건이다.
-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 추진 현황
- 2000년도 이후 추진된 경협사업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실패했다.
  - 최근 버섯 재배 및 가공, 김치 가공 등 유통 분야의 경협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앞으로 북한에서 수산 양식 등 수산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조항을 보완·구체화하였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통일부장관의 검사·조사를 정당할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 제4항). 정부는 경협사업자 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도·감독을 통해 남북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 농수산 분야 경험사업 추진 현황

협력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승인
미홍식품(합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 가공, 양식,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97.5
파라우수산(합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 가공	원산, 해주	97.8
금호식품(합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 고구마 전분 제조	평양	97.8
안흥개발(합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남포	98.3
백산실업(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 배지 생산, 버섯류 생산, 수출	나진, 선봉	98.10
(주)해주(합작)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생산, 판매	서해인근	99.1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김치, 된장, 상향버섯음료)	평양	03.1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생산	평양, 황해도	04.2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04.8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 판매	평양	04.12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 판매	평양	04.12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 판매	원산	05.6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봉산, 연덕	05.12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05.12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및 판매	황북, 황남, 평양	05.12
(주)두담(합영)▲	아리랑총회사	식자재 제공사업	개성	07.7
(주)통일고려인삼(합영)▲	광명성총회사	인삼재배 및 가공공장 운영	평양, 봉산	07.12
독여료▲	광명성총회사	식품제조업	평양	08.2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가공업	남포	08.6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2008. 8.

주: ▲는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을 모두 받은 기업

## 2. 한국의 경협 관련 법, 제도 현황

- 한반도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월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특별선언)과 그 후속 조치로 10월 발표된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재개되었다.
-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물자교류가 재개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이러한 조치와 함께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 남북한 사이에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1992년 2월에 발표된 「남북한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 후속 조치로 19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직교역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결제수단으로 청산결제계정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동의를 이루어졌다.
  - 부속합의서에는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1993년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함으로써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으나 1994년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남북한 사이



의 교역, 위탁가공, 투자 등이 증가하였다.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협에 관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4월 30일 대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방문이 크게 완화되고 교역,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대북 투자의 내용이 농업, 수산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태영수산/LG상사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가리비 양식 투자를 실시하고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도 성사되었다.
- 2000년 6월 개최된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진전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 투자보장 등 4개 분야 합의를 채택하였다.
  - 차관형식으로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향후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기틀을 제공하였다.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당국자 사이의 경협사업이 최초 실현됨으로써 민간 기업의 경협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92년 2월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한 기본 규범이며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부속합의서」는 기본원칙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 「부속합의서」에는 13개 항목에 걸쳐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실시원칙과 협력분야 등을 정하고 있다.
  - 13개 항목 가운데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실시원칙과 협력분야, 상대방 인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 보장,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 교류물자의 가격, 대금결제방식, 투자보장,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통상조약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남북한 당국은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써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으며 이후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3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동 합의서를 공식 교환함에 따라 효력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청산결제합의서’) 등 4개의 합의서가 있다.
  - 이러한 합의서가 채택되기 전까지만 해도 남북한은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 각 합의서의 전문에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투자보장합의서
  -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투자 및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 이중과세방지합의서

-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기업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 하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청산결제합의서
-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남과 북은 각각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 달러화로 하도록 한다. 단, 남북합의하에 다른 화폐로 할 수 있다.
  - 청산결제 이외의 대금결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문제 등을 협의한다.
- 상사분쟁해결합의서
-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

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토록 하였다.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 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한다.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을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 3. 북한의 경협 관련 법, 제도 현황

- 북한에 대한 외국의 교역 및 투자에 적용되는 대외경제법제에는 기본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제가 있다(이기희, 2003).
  - 은행의 경우 「외국인 투자은행법」이라는 특별법을 두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 법제로 삼고 있지만 비 은행기업의 경우에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적용한다.
  - 대외개방을 위한 일반 법제로는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무역법」, 「가공무역법」, 「공증법」, 「토지임대법」, 「외화관리법」, 「환경법」, 「보험법」, 「세관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 파산법」 등이 있다.

- 이외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및 관련 법제와 민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제와 함께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간의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역 및 투자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해 1972년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을 20년 만인 1992년 개정한 데 이어 동 헌법을 1998년 다시 개정하였다.
  - 1992년 헌법은 북한의 대외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필요에서 대외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고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1998년 헌법은 1992년 개정된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1992년 헌법은 “자기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제16조)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동 헌법 37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내외 경제개방정책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1998년 헌법에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외개방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이 같은 헌법적 근거는 북한이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북한은 헌법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대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였다.
- 대외경제계약법
  - 1995년 제정된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무역, 투자, 서비스 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 형식 및 절차,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다.

- 이 법률의 시행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계약은 외국인투자관계법과 민법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절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등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다.
- 이 법률의 목적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의 대외경제계약 체결과 이행을 규율하고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있다.
- 북한기업이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대외경제상사거래는 이 법에 따라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사회주의상업법, 외국인투자관련법 등 다른 해당 법규에 따르도록 한다.
- 북한에서 대외경제계약 당사자는 대외경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은 이 법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대외경제계약법」에 의하면 대외경제계약시 내각의 대외경제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의 형식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계약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국제적인 원칙과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 대외민사관계법

- 1995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에 의해 채택된 「대외민사관계법」은 그 이전까지 북한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섭외적 법률관계를 체계적인 국제사법으로 처음 규정한 대외민사관계의 준거법이다.
- 이 법률에 의하면 대외민사관계란 “대외매매관계, 해상수송관계, 대외보험관계와 같은 재산관계와 외국국민들의 상속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다른 나라 법인,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 가족관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의 하나이며 이 법의 시행으로 북한은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외국과의 경제교류에 의한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사업상의 섭외적 법률관계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 ○ 대외경제중재법

- 1999년 8월 채택된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국의 대북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한 법제이다.
-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및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
- 이 법은 총 4개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북한에는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괄법으로 1995년 제정된 「중재법」이 있으나 이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며 대외중재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개별 법률에서 각각 분쟁해결을 규정할 뿐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 이 법률에서 규정된 중재 대상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 해외조선동포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적용 사례가 없으며 명확한 규정도 없다.

#### ○ 무역법

- 1998년 3월 채택된 「무역법」은 대외 무역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고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하기 위한 법률이다.
- 이 법률은 총 5장 5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은 무역법의 기본으로서 법의 사명, 무역의 기본원칙과 요구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무역의 기본원칙으로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준수를 들고 있으며 무역거래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통일적 균형을 위한 지도와 보장 강화, 무역일꾼의 육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발전 등을 제시한다.

- 제2장은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무역회사는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에 의해 설립되고 무역회사가 계약을 정확히 체결, 이행하도록 해당 기관이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 제3장은 무역계획 작성의 원칙과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규정한다.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 항목으로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의해 무역활동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하에 전개함으로써 무역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제4장은 수출입허가기관과 수출입허가질서, 허가를 받는 물자의 반출입질서에 대해 규정한다. 수출입허가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해당 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제5장은 무역사업의 지도통제 과정에서 제기되는 요구에 대해 규정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수출품 비중을 높이고 무역을 확대, 발전시킬 것을 규정한다.

#### ○ 가공무역법

- 2001년 4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승인된 「가공무역법」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통해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 이 법의 제정 이전까지 가공무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관행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가공무역법」의 제정을 통해 가공무역을 제도적 틀 안에서 규정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남북한 사이에 위탁가공무역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 법의 제정은 남북한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남한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의 확대를 통해 북한에서 반입하는 품목의 제한과 구매력의 한계라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저렴한 임금을 활용함으로써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북한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을 차단하면서 북한이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이 법은 총 5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공무역법」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공동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가공무역승인을 금지하고 가공무역에 대한 당국의 지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 최근 북한은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협동농장이나 기업소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고 과거에 비해 경영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영농활동도 일정 범위 허용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경협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단위 경영주체의 자율권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급속한 경협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제 4 장

---

### 경협사업 활성화 저해 원인 분석과 과제

#### 1. 농수산 분야 경협사업 추진의 문제점

- 상대방 접촉 및 의사교환
  - 북한과 경협을 추진코자 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 어떤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접촉점이 확립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할 때 북측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매번 간접 경로를 통해 시도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 사업개시 및 협상
  -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통일부의 승인 과정에서 북측과 빈번히 접촉하여 협의해야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며 협상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사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북한 상대방으로부터 현물투자나 선금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다.

- 협상에 참여하는 북한 상대방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인 경우가 많아 기술적인 문제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 곤란하다.

#### ○ 방북

- 농수산 분야의 사업은 필요한 시기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지만 남북 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 물류

- 농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북한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워 중국 등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나 통관과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남북한 사이의 운송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북한 내의 하역시설과 도로, 운송 차량 등 운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된 날짜에 물자를 운송하기 어렵다.
- 남북한 사이의 물류비용은 제3국 수송로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원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 판매

- 경제적인 문제로써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등이 명확치 않으며 생산물의 품질이나 납품 일자가 보장되지 않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 ○ 가격 결정

- 가격은 남북한 경협 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경협사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격은 국제시세와 품질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북한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터무니없이 가격을 결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료나 제품의 국제가격 변동을 반영해야 하지만 한번 결정된 가격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험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 ○ 대금결제

- 대금은 계약 당사자와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결제하도록 요청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 많은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대금을 수령하는 자의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금융결제 수단이 없어 중국 등 제3국의 계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금 결제 과정이 번거롭고 수수료가 매우 비싸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 기타

- 사업 외적인 문제로써 북측 사업상대자가 사업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사업 외적인 부담으로서는 옷돈 성격의 계약이해 보증대금의 요구, 무리한 경제적 지원 요청, 사업과 관계없는 차량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 제품 요구 등이 있다.

## 2. 경험 기반 및 제도

-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 법제는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원리와 커다란 괴리가 있어 외국과의 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계가 있다.

- 북한의 헌법에는 외국인투자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 다만 북한 헌법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뿐 여전히 외국 투자기업의 국유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다.
  - 이러한 점은 남한동포 또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남북한 사이의 경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북한이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헌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거나 최소한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국의 무역 및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 이는 북한의 입법 행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나 대외경제관련 법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 따라서 북한은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대외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선전이나 홍보를 위한 추상적 선언에 그친 조항이 있다.
  - 예를 들어 「대외경제중재법」은 중재비용, 중재 제기에 필요한 문건, 심리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규정이 모호할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과의 무역 또는 실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북한은 대외경제법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하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외국인 또는 투자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에 합치할 정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 북한은 상사분쟁과 관련하여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천명하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분쟁중재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가입하지 않아 신뢰를 얻기 어렵다.
  - 북한은 상사분쟁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서는 「유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및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어디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을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 따라서 북한이 외국인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재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개방의 폭이 좁으며 대내적인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법률의 대외지향성이 약하다.
  - 향후 북한은 국가간의 최혜국 대우와 무역제재 등에 관한 대외적 사항을 대외경제법제에 명문화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법령의 실제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가 부족하다.
  - 특히 「대외경제중재법」을 통한 피해구제 및 대외분쟁 해결사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대외경제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 대외경제 법제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의한 권익보장의 실례가 소개되어야만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중 어느 법률에서도 남한기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남북한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가공무역법」에서는 남한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위탁가공무역의 주문자 범위에 남한기업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북한이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법과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등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외국과의 투자 및 거래 관계에만 적용될 뿐 남한 또는 남한 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는 외국투자자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남한 내지 남한기업은 북한의 법규 규정상 외국 내지 외국기업이 아니므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적용하기 어렵다.
- 북한은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과의 거래 범주를 외국인, 해외동포, 남한동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교역을 할 경우에는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문제점과 대책
  - 투자보장합의서의 송금에 관해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사이에는 20배 이상의 격차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중 기업소득세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으로서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인정, 복지후생기금 등의 출연에 대한 손금처리 불인정, 기업 해산시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중과세, 북한 원화 환율 적용시 청산소득 발생문제, 기업 해산시 과중한 납세 담보금 설정, 과도한 납

세 연체료 등을 들 수 있음(김동균, 2002). 남북한 사이의 경제체제와 세제가 달라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는 4개 합의서 중 경협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합의서 내용대로 남북한이 상사분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의장중재인 및 중재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 방법에 따라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고 법 집행상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재 관련 국제조약인 「유엔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및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칭)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운용하여 실질적인 사상분쟁 해결을 추구한다.
  - 남북한은 청산결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환결제를 요구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만 청산결제를 이용함으로써 청산계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결제 방식이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분간 청산결제와 환결제를 병행하면서 점차 환결제 방식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 동서독의 경우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프랑크푸르트협정(1949.10.8~1951.3.31), 베를린협정(1951.9.20~), 신베를린협정(1960.8.16~1989)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합의를 통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남북한 사이의 합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활용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3. 남북경협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 남북한 사이의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둘러싼 외부의 요인도 존재한다<표 4-1>.
-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요인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요인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표 4-1. 남북경협 저해요인

구 분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남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의 불확실성</li> <li>○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li> <li>○ 경협 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유인 부족</li> <li>○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li> <li>○ 경협관련 제도의 미비</li> </ul>
북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개방정책의 미흡</li> <li>○ 정책의 일관성 부족</li> <li>○ 남한을 특수 관계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침체와 경제기반의 미비</li> <li>○ 열악한 투자환경</li> <li>○ 경협관련 규범과 의식 부족</li> </ul>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li> <li>○ 느슨한 대북 외교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규정의 모호성</li> <li>○ 대북 경제 제재</li> </ul>

### 3.1. 남측 요인

#### ○ 정책적 요인

-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보험제도가 미비하며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제도도 기업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실용화되기 어렵다.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의 기초가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경협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기초가 경협 자체를 제한하는 듯한 인식을 주고 있다.
- 남한 기업이 북한과 경협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규제가 많아 사업승인을 받기도 힘들며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 ○ 경제적 요인

- 기업인이 경협을 추진할 때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인데 북한과의 경협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어렵다.
-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잦은 정책 변화 때문에 경협 환경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이러한 남북한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제한적이다.
-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일방의 이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는데다 불확실한 경협 환경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낮아진다.

## 3.2. 북측 요인

### ○ 정책적 요인

- 북한은 남한에 대한 경협 창구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로 단 일화하고 남한 기업의 상담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 북한의 기존의 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방북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적 접촉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은 대남 경협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률도 없다.
- 북한은 남한을 특수 관계로 인식하여 외국인의 투자 관련 법률인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남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외국과 차별화 정책을 적용한다.

### ○ 경제적 요인

- 북한의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금융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도 미비하다.
-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전기, 통신, 운송 등 하부구조가 매우 열악하여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출 기업이 하부시설에 직접 투자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 북한은 공식적인 대남 경협 창구인 민경련을 통해서만 남측 기업인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협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인은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경협을 검토하기 보다는 경제외적 요소를 크게 감안한다.

### 3.3. 외부 요인

#### ○ 정책적 요인

-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어 남북한 사이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완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경협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제사회와 북한의 외교적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점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 ○ 경제적 요인

- 남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는 않는 경향이어서 남북경협에 의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남한으로 표기하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표기할 경우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특혜를 받기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한 사이의 경협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 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협 저해요인이 제거된 다음에는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

해야한다.

-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는 정책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남북한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등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표 4-2>.
  - 외부환경의 개선은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제관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4-2.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구 분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남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li> <li>○ 정경 분리 정책의 유지</li> <li>○ 경협 규제 및 절차의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논리에 입각한 투자 결정</li> <li>○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li> <li>○ 경협관련 제도의 보완</li> </ul>
북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개방정책의 심화</li> <li>○ 경협정책의 일관성 유지</li> <li>○ 국제규범과 일치된 제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회복 및 산업인프라 구축</li> <li>○ 투자환경의 개선</li> <li>○ 경협관련 규범과 의식 전환</li> </ul>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li> <li>○ 대북 외교 관계의 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간 명확한 원산지 규정</li> <li>○ 대북 경제 제재 완화</li> </ul>

- 경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개혁·개방의 확대가 가능하다.
-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합의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부분적

- 인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경협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
- 경협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이므로 아무리 합의 내용이 좋더라도 경협 주체가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따라서 합의된 내용은 남북한이 그대로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대표적인 경협 활성화 조치인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북한은 2005년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상응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으나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게 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서 밝힌 바 있듯이 북핵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

## 제 5 장

### 농수산분야 경협사업 추진 대책

#### 1.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농수산 분야 협력 합의 내용

-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농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 개최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 이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자는 시범농장 조성과 운영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표 5-1>.
  - 그러나 합의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한 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였으며 그 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 정상회담 이후 남북총리회담에서 2005년 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 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회의에서 농수산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되었다.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한 분과로써 농수산협력분과가 설치되고 총리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하여 2007년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5-1. 남북 당국간 농업분야 관련 회의

구 분	내 용	비 고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농장 조성 및 운영</li> <li>○ 종자정선시설 지원</li> <li>○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li> <li>○ 축산, 과수 등 분야 협력</li> <li>○ 산림녹화 협력</li> </ul>	2005. 8
남북농업협력 실무 접촉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양돈)사업 추진 합의</li> </ul>	2007. 11
남북총리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li> <li>○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을 2007년 중 착수</li> <li>○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 협력사업 추진</li> </ul>	2007. 11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내용 추진</li> <li>○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는 2007년 중 착수</li> <li>○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창고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2007. 12. 21~25)</li> <li>○ 북측 수요가 있는 농업분야 시범사업 우선 추진</li> <li>○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 2008년 중 착수</li> <li>○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li> </ul>	2007. 12
제1차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리원 양묘장 조성</li> <li>○ 2008년 중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li> </ul>	
남북농업협력 실무 접촉 제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돈사업 자재 및 장비 제공 구체적 합의</li> </ul>	2007. 12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2007년 중 착수,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li> <li>○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li> <li>○ 남북한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기술과 정보 교환, 장비의 현대화, 수의약품 협력</li> <li>○ 과수, 채소, 잡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li> </ul>	2007. 12

자료: 통일부. 각종 합의서 및 해설자료



- 지금까지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시범농장 조성 및 운영은 당국자 사이에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사) 통일농수산을 통해 동해안 금강산 지역과 서해안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당국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지만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에 농업과학자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종자 정선 및 가공시설 지원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 축산 협력사업 중 양돈 협력사업이 몇 차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 양묘장 조성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당국자 차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민간의 협력사업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유전자원 교환, 수집·보존·이용에 관한 협력은 당국자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 동안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 남북한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교환, 장비 현대화, 수의약품 협력은 그 동안 당국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과수, 채소, 잠엽 등에 관한 협력은 그 동안 민간단체를 통해 과학자의 교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 남북한 사이에 수산 분야의 협력을 처음 논의한 것은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이었으며 이어 개최된 경추위 제1차회의에서 공동어로 및 양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5-2>.

표 5-2. 남북 당국간 수산분야 관련 회의

구 분	내 용	비 고
제4차 장관급회담	○ 북측은 남측에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하겠다고 제의	2000. 12
경추위 1차회의	○ 공동어로 및 양식 방안 제의	2000. 12
제15차 장관급회담	○ 2005년 7월 중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및 개최 합의	2005. 6
경추위 10차회의	○ 2005.7.25-27일간 개성에서 제1차회의 개최	2005. 7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회의	○ 서해상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이용 ○ 서해상 제3국 어선의 출입통제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 협력 ○ 우량품종 공동개발 및 기술교류 ○ 제3국 어장 진출협력	2005. 7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 남북한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협의하였으나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주장으로 합의 실패	2006. 3-5
남북 정상회담	○ 서해안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서해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 추진	2007. 10
남북 총리 및 국방장관회담	○ 2008년 상반기 서해 공동어로를 착수키로 합의 ○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합의 실패 ○ 관심 수역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협력	2007. 11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 북측 동해안의 일정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추진 합의	2007. 12
남북농수산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남북은 2008년 중 북측 동해수역에서 일정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 활동 개시 ○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을 위해 2008년 상반기 내 현지조사 실시 ○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유통협력	2007. 12

자료: 통일부, 각종 합의서 및 해설자료

- 그 후 남북수산협력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여러 가지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군사 문제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 등 중요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후속 회담으로 총리 및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실패하고 대신 몇 가지 수산 협력사업에 대해 합의하였다.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및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해안 대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선박의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양식, 유통 등 구체적인 수산협력사업에 대해 합의하였다.
- 남북한은 수산 분야에 대해 여러 차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현된 사업은 전무하다.

## 2. 당국간 합의된 협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대책

### 2.1. 양돈사업

#### 2.1.1. 사업개요

- 2007년 12월 18일 남북한 당국자는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에서 다음과 같이 자재 및 장비 제공에 합의하였다.
  - 남측은 총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측에 상시사육두수 연산 1천톤 규모(5,000두)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 등의 품목 및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측의 「농업

성 축산관리국」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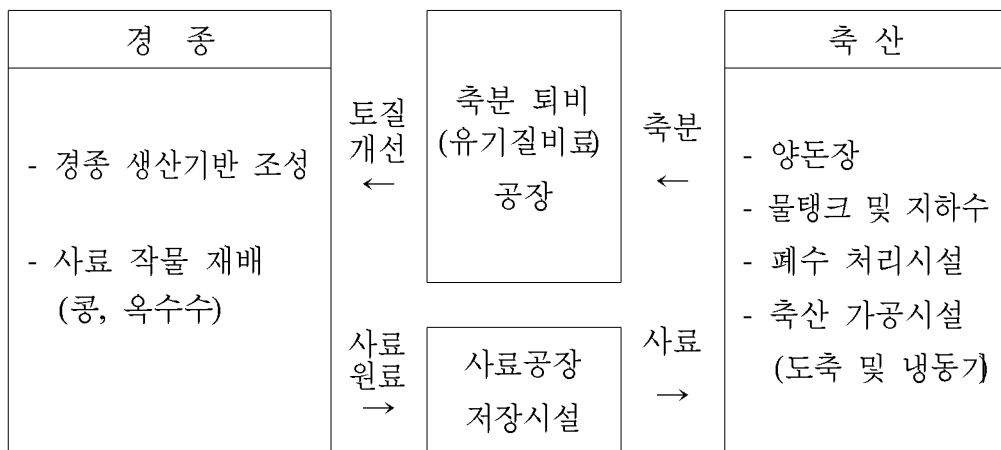
-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 차관 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한다.
- 수송비용과 관련하여 육로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의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수송은 남측이 부담한다.
- 그 외 북측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사업기간(2년) 내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는 남측이 보장하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금액에 포함시킨다.
- 북측은 남측인원들의 북측 지역내 체류시 통신·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 2.1.2. 추진방향

- 양돈장 시설 건설 지원
  - 축사 설계도면 등 건설 시공기술 이전
  - 축사 건설을 위한 작업공구류를 비롯하여 자재, 장비류 제공
- 양돈장 부대시설 건설 지원
  - 축사 이외 분뇨저장탱크, 석탄저장고 등 부대시설 지원
  -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공
  - 사료공장 및 유기질 비료 생산 시설, 축산 가공시설 지원
- 양돈장 운영 지원

- 종돈 및 사료 지원
  - 양돈 사양관리 기술 지원
  - 번식과 비육 일관 사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양돈 생산성 향상
  -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시설 및 동물약품 제공
  - 콜레라, 구제역 등 돼지의 질병 관리 및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확립
- 경종과 축산의 결합을 통한 복합영농 및 지속농업 기반 확립<그림 5-1>
- 축산분뇨(축분)의 위생 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양돈장 운영
  - 축분의 가공을 통해 유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지의 지력 증진
  - 축분 가공을 통해 유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지의 지력 증진
  - 축분 살포를 위한 트랙터, 액비살포기 등 지원
  - 콩, 옥수수 등 양돈 사료 원료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그림 5-1. 양돈사업 체계도



### 2.1.3. 기대효과

- 현대적 양돈장, 종돈 및 사양기술 교류를 통한 북한의 축산 생산성 향상
- 축산과 경종의 결합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지속농업 실현

- 축산물 생산 증대를 통한 주민의 영양 개선
- 남한의 장비, 물자 교류를 통한 남북한 축산 경협 기반 조성

## 2.2. 양묘장 조성사업

### 2.2.1. 사업개요

-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2008년 2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 3/4분기 안으로 평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자료교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2008년 4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립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

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2.2.2. 추진방향

- 북한의 황폐지 복구 조림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북한 지역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양묘장 조성
- 평양근교에 100ha 규모의 양묘장 조성(20ha, 5개소로 분산 조성)
- 조성시기 : 4~10월, 종자과종시기 이전까지 완료(3월)
- 양묘장 조성방법
  - 부지선정 제공 : 북측
  - 조성설계 및 공사 : 북측과 협의하여 남측주관 실시

## 2.2.3. 기대효과

- 북한의 황폐지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기후 여건이 같은 북한 지역 내 생산·공급함으로써 조림시기에 맞는 적기 묘목공급이 가능하여 성공적인 조림효과 기대
- 1차적으로 황폐지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생산·공급하고, 2차적으로 일반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원으로 활용

## 2.3. 종자 정선 및 가공시설

### 2.3.1. 사업개요

- 남북한은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 협력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써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



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 2.3.2. 추진방향

- 종자생산과 가공, 보관, 처리시설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종자생산 협력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된 종자의 가공, 보관, 처리시설은 단기적으로 추진한다.
  - 종자의 생산은 국가의 종자 보급체계와 연계되어 있고 유전자원 및 품종 개발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농업기술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현 단계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은 주로 물자 지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협보다는 지원의 성격이 짙다.
  - 우량종자 생산을 경협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식량작물보다는 채소가 더욱 바람직하며 이는 남한의 종묘회사가 경협의 주체가 된다.
  - 단기적으로 종자 생산기술 이전과 인력 훈련을 통해 북측의 종자 생산기술을 향상시킨 다음 계약재배 형태의 협력을 추진한다.
  - 종자 생산과 관련해서는 채종농장에 대한 협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표 5-3, 표 5-4, 표 5-5>.

표 5-3. 품목별 지원 기준

품 목	소 요 기 준	비 고
비닐	작물 15ha당 10,000m <sup>2</sup>	소요량의 40%
펌프(능력 1,000리터/분, 5.3hp 모터)	15ha당 펌프 1대, 호스 100m	발 관개용
농약Alpha Cypermethrin Permethrin MC-311	옥수수 ha당 0.5리터 채소 ha당 0.3리터 벼 ha당 0.67kg	해충약 해충약 제초제
타이어 750-20 11-38 650-16	50ha당 1조 50ha당 1조 50ha당 1조	
경유	ha당 0.02톤	봄철 경운용

자료 : 정정길 외. 2001. 「농작물 종자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5-4. 채종농장 지원 품목 및 소요

자 재 명	규격 및 제원	소요량	단가(US \$)	금액(US \$)
양수기		310대	1,500	465,000
호스	직경 125mm	31,000m	2.5	77,500
비닐	폭 200cm/두께 0.8mm	4,000,000m <sup>2</sup>	0.07	280,000
비료	요소(Urea)	2,500 M/T	200	500,000
	2인산(DAP)	3,100 M/T	250	775,000
	염화칼리(Potassium)	1,500 M/T	100	150,000
살충제	Alpha Cypermethrin (100g/ℓ)	3.30 M/T 1.25 M/T	25,000 25,000	83,050 31,250
	제초제 Permethrin(50g/ℓ)	3 M/T	45,000	135,000
인력분무기	MC-311	1,620대	50	81,000
방제복	15-18리터용	1,620벌	50	81,000
트럭 타이어		80조	120	9,600
트랙터 타이어	750-20	300조	260	78,000
정지작업 연료	f(650-16)/r(11-38)	300 M/T	210	63,000
토양검사 기구		20조	500	10,000
포대	폴리에틸렌 포대(40kg)	400,000장	0.30	120,000
총액				2,930,400

자료 : 정정길 외. 2001. 「농작물 종자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국제기구의 시범사업을 참고로 20개소의 채종농장 총면적 15,535ha를 대상으로 벼(4,580ha), 옥수수(6,640ha), 채소(4,060ha), 감자(251ha)의 종자생산 규모를 가정함.

표 5-5. 2개의 시범농장에 대한 종자가공시설 지원 규모

용도	자재명	소요량	단가(US \$)	금액(US \$)
운반 종자가공	픽업 트럭	1대	13,000	13,000
	수분측정계	4대	50	800
	인큐베이터	2대	6,900	13,800
	종자정선기	4대	5,000	20,000
	종자건조기	4대	4,500	18,000
	종자선별기	4대	1,000	4,000
	종자처리기	4대	5,000	20,000
총액				89,600

자료 : 정정길 외. 2001. 「농작물 종자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2개의 농장을 사업대상으로 하되 한 농장은 총 820ha로 벼 96ha, 옥수수 233ha, 채소 491ha를 재배하며, 다른 농장은 총 628ha로 옥수수 377ha, 감자 251ha임.

- 종자의 가공, 보관, 처리시설은 국가 보증종자에 대한 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농작물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우선 벼와 옥수수 등 주곡작물에 대한 종자 가공, 보관,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 감자 등 영양변식 작물에 대한 가공, 보관, 처리시설은 곡물에 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곡물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한다.

### 2.3.3. 기대효과

- 종자 정선 및 가공시설은 질 좋은 종자의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로써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시설을 교체할 경우 종자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종자 보관시설 개선을 통해 종자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농작

물의 생산성 증대로 연결된다.

## 2.4.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 2.4.1. 사업개요

- 남북한은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 협력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 남북한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 2.4.2. 추진방향

- 단계별 추진방향
  - 3단계로 구분하여 신뢰형성단계 → 본격 추진단계 → 교류협력 정착단계 순으로 협력의 규모와 폭을 확대한다<표 5-6>.

표 5-6. 남북한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협력사업 단계별 추진 방향

구 분	1단계 신뢰형성단계	2단계 본격 추진단계	3단계 교류협력 정착단계
유전자원 시설	· 기존 유전자원저장고 시설 개보수, 기자재 확충 · 유전자원저장고 (10만점 규모) 기본설계	· 유전자원저장고 (10만점 규모) 실시 설계 · 1단계(5만점 규모) 건설	· 유전자원저장고 (10만점 규모) 완공 및 운영 관리
공동 실험동	· 공동실험동 건설 준비	· 공동실험동 건설 - 실험장비 및 설비 지원	· 공동실험동 운영
공동연구	· 초기단계 공동연구 - 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목록 교환	· 본격적인 공동연구 - 유전자원 교환 - 유전자원 보존기술 - 유전자원은행 운영기술	· 공동연구 정착 - 유전자원 탐색 및 수집 - 남북한 유전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 현대화된 종합실험동 건설
  - 열악한 북한 농업연구 인프라(연구 기자재 부족 등) 개선
  - 실험 설비 지원 시 북한의 전기 품질 등을 감안하여 농업과학원내 종합 실험동을 건설하여 집중 관리 필요
  - 종합실험동에 기초 연구 설비(초자류, 향온향습기, 산도측정기, 교반기 등), 공동연구에 필요한 분석 장비 중심으로 우선 지원
- 종자 및 영양체에 대한 병해충 검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종자검색, 어린식물체검사, 엘리자검사 등 다양한 형태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현미경, 발아장치 등 부대설비를 갖추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정선기, 선별기, 발아기 등 유전자원 처리와 관련한 설비 및 장치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북한 유전자원 저장고 지원 및 유전자원 수집, 교류 사업 추진
  - 북한이 보유한 54,000여점의 유전자원(1만 여 점의 토종유전자원 포함)의 안정적 보존(1만 여 점 정도만 저온저장고에서 저장)

- 10만점 규모의 국제표준의 유전자원 저장고 지원<표 5-7>
- 유전자원은행 운영기술 지원, 유전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표 5-7. 유전자원저장고 사양

저장구분	면 적	온도조건	습 도
장 기	60 m <sup>2</sup>	-18±1℃	제상
단 기	120 m <sup>2</sup>	4±1℃	40%이하

### 2.4.3. 기대 효과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의 토종 유전자원 확보로 국제사회의 배타적 농업유전자원 이용에 대비하고 남북한 공동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식량안보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 북한의 농업과학자 및 지도자 기술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농업 자생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 2.5.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 협력

### 2.5.1. 사업개요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 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써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 북한에서 생산되는 가금육의 남한 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2003년 9월부터 북한의 가금육 위생 상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어 2004년 10월 북한산 가금육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었다.
  - 이 위생조건은 북한산 가금육이 남한으로 반입되더라도 질병 유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 제정된 위생조건에 의하면 남한으로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금육은 남한에서 현지 점검을 한 후 작업장으로 승인된 도축장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가금육 생산시설에는 뉴캐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가금에 발생하는 주요 전염병 발생이 적어도 1년간 없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북한 전역에서 3년간 발생하지 않아야 북한산 가금육의 남한 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성환우 외, 2006).
  - 지금까지 남한산 동물이나 축산물을 북한에 반출한 적은 있지만 아직도 북한산 가금육이 남한에 반입된 실적은 없으며 전염병 유입원인이 될 수 있는 소, 돼지, 닭 등 동물이나 관련 축산물조차 반입된 적이 없다.
- 일반적으로 국가간 동물을 교역할 때 양국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검역절차를 진행한다.

- 그러나 아직도 남북한 사이에는 동물의 수출입에 관한 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국이 수입대상 동물에 대한 검역조건을 상대국에 제시하여 수출국이 대상 동물에 대한 수입국이 제시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
- 남한산 동물 및 축산물이 북한에 반출된 적이 있으나 원조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이어서 수입국인 북한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역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반출입이 확대될 경우 수출을 하는 국가나 수입을 하는 국가 모두 방역기준을 설정해야만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2.5.2. 추진방향

- 남북한이 동식물 검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제반 기술적 요건을 검토하고 서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북한은 남한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하자 이를 근거로 2006년 초부터 3개월간 남한산 닭고기, 계란 등을 금강산 지역내 반입을 제한한 바 있다.
  - 북한은 2004~0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산 닭고기를 남한으로 반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축산물의 수출입 중 북한산 가금육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이 제정 고시되어 있으나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수입위생조건에는 축산물 교류로 인한 남북한간 가축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특정 질병 비발생조건, 수출 동물이나 축산물 생산 농장 및 작업장 조건, 축산물의 잔류물질 허용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식물 검역은 비단 남북한 사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가능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간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수출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위생 관련 점검 등으로 2~3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검역을 실시하다가 차츰 국제기준에 맞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 북한은 동식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이 이들 기구에 가입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 북한의 국경검역소에서 검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역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검역관의 검역기술 교육도 필요하다.
  -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악성 동물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법, 근절 방법 등 선진 방역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
- 동식물 방역은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동물에 발생하는 전염병의 이동이나 전염을 예방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남북한 사이의 정보 교환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유사한 생태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식물 방역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동식물의 병해충이나 질병은 사람이나 가축의 왕래에 의해 전염될 수도 있지만 바람을 통해 자연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일차적으로는 식물의 병해충이나 동물의 전염병 발생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북한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험이 있으므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전염병 발생시 방역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 동식물 방역은 남북한 사이에 동식물의 이동이나 농축산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 동식물 검역체계와 마찬가지로 동식물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차적으로 주요 병해충 및 질병을 대상으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동식물 방역은 제반 기술적 문제를 점검해야 하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사이에 교류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전문 용어가 다르고 발생하는 병해충 및 질병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용어의 교류나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5.3. 기대효과

- 동식물의 방역 및 검역 협력을 통해 외래 병해충 및 질병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 동식물 방역 및 검역 협력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식물이나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고 농산물 교역과 경험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동식물 방역과 검역은 남북한 사이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

## 2.6. 농업과학기술 협력

### 2.6.1. 사업개요

-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 2.6.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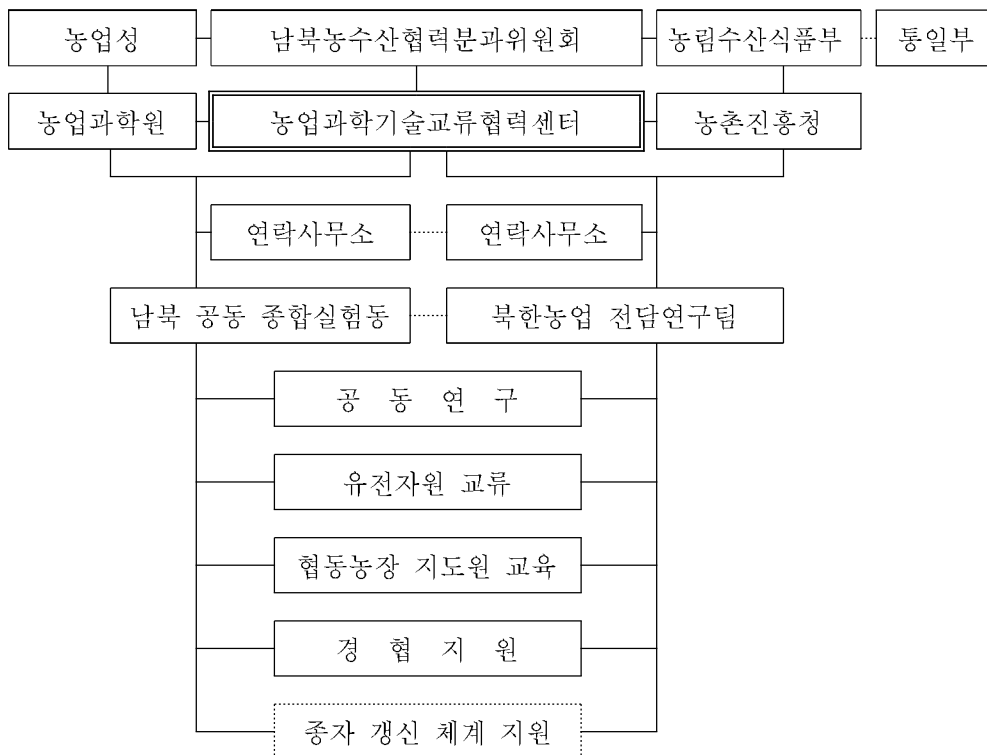
- 남북한 사이의 농업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수출농업을 발전시킨다.
- 농업과학기술협력은 전문가 교류, 학술회의 개최, 농업시찰단 및 연수단 초

청 방문,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농림업분야 학술교류 추진
  - 국내외에서 농림업기술 전문가 학술회의 주최
  - 국내외에서 농림업분야 공동연구 추진
- 농림업기술 관련 「정보교환창구」 마련
  - 농업기상정보, 가축질병 및 병해충 발생상황, 식량 및 농산물 수급상황, 농림업 관련 투자·교역제도 관련 정보 교환 등
  - 농림업 시범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교류를 추진
- 북한 농업시찰단 또는 농업연수단 초청
  - 남한의 주요 농업생산지역, 유통·물류시설, 가공업체, 수출업체,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방문 기회 제공
  - 분야별 농림업기술연수
  - 유학생 및 과학자 교환 연수
- 현대화된 남북농업과학기술교류센터 설치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 중앙 농업연구기관 사이의 협력으로 남한의 선진 농업과학기술을 북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파
  - 북한의 기존 농업과학기술 연구 및 보급체계를 활용함으로 남한의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기술 확산의 효과를 극대화
- 남북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농업 분야 경험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벼 기계이앙 재배기술 조기 정착을 위한 육묘기술 연구
  - 녹비작물을 활용한 북한 농토배양 연구: 토양생산성 향상
  - 2모작 면적 확대를 위한 연구: 북한 토지 이용률 극대화
  - 북한 병해충 예찰 시스템, 토양 조사 및 분석 공동 연구

- 남북 공동 품종개발 연구
- 공동연구를 위한 설계협의, 중간진도관리, 결과평가를 실시하며 남북한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연례회의(3회/년)로 진행한다.
  -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은 전시포를 운영한 다음 성과가 좋고 안정성이 확인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구성안<그림 5-2>
  -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남한의 농촌진흥청 관계자를 주축으로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상적인 업무를 연락한다.

그림 5-2.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구성안



### 2.6.3. 기대효과

- 농업과학기술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술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북한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남북 공동연구를 통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 북한 농업과학자의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농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
- 농업정책 당국자간 협력 확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2.7. 남북한 수산협력사업

### 2.7.1. 사업개요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 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수산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

북한은 수산분야의 공동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 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2.7.2. 추진방향

- 과거 (주)해주, 안승유통 등의 기업과 전국어민총연합회, 수협 등 어민단체가 북한 수역을 대상으로 남한의 어선 입어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입어사업은 선원에 대한 신변보장, 조업안전, 어장의 경제성 등이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 따라서 향후 북측 동해야 수역을 대상으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어업협력기본합의서 체결, 시범사업 우선 추진, 자원조사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제3국의 어선의 불법 조업 퇴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이와 함께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 과거 미홍식품, 태홍수산, 흥진교역, (주)아천 글로벌, (주)피쉬닷컴 등 남한의 민간기업이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현재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다.

-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남북한 수산물 유통 및 가공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행정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
  - 앞으로 수산 분야 유통 및 가공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3국 수출 또는 남한으로의 반입을 통해 판로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설투자, 상품성 제고, 원자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다른 협력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산 분야의 유통 및 가공 협력사업도 먼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가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 북한과의 경험사업에서 늘 문제가 되어 왔듯이 경험을 추진할 때는 북측 사업파트너의 부패, 계약이해 경시 풍조, 의사결정의 지연 또는 비합리성, 북측 관계자의 사업외 비용 요구 등으로 인한 사업 외 위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여야 한다.
  - 북한의 수산분야 실정을 감안할 때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을 연계하되 수산물 유통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가공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북한의 수산물은 많은 품종이 소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집하 단계부터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차가공, 냉동 및 냉장, 포장, 규격화, 품질표준화를 위한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북한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로 수송이 선결 과제이다.
- 남북한 수산분야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역의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등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 우선은 전문가의 인적 왕래를 통해 북한 수산과학연구원과 수산양식 분야의 기술을 상호 교류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면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2.7.3. 기대효과

- 수산협력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적은 투자와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수산협력은 인적교류나 대규모의 시설 설치 없이 협력이 가능하다.
- 북측 지역의 입어 및 조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조업을 최소화함으로써 한반도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 수산 분야는 수산물을 통한 경제적 효과 이외 바다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도 기여한다.

## 3. 새로이 추진할 경협사업의 발굴

### 3.1. 작물 생산 및 가공분야

#### 3.1.1 사업개요

- 남한의 여러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온실을 이용하여 계약재배 형태의 채소 생산을 유도한다.

- 대북 농업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측 상대방은 자생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교역 및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다.

### 3.1.2 추진방향

- 추진주체
  - 시범영농단지 추진주체인 영농지원단을 확대·개편하여 추진
  - 영농지원단에 농협(금융지원, 농자재공급소 운영) 포함
- 영농지원단 및 참여기관의 업무분담과 연·협력체계 구축
  - EDCF방식의 차관자금 지원 : 통일부(또는 한국수출입은행)
  - 행정사항 :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 시범농장 운영 및 기술지원 : 농진청
  - 농업금융 제공, 농자재공급소 설치 및 운영 : 농협
  - 농산물센터 설치 및 운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 협력체계에 관한 자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3.1.3. 기대 효과

- 특구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지역 주민의 소비생활을 통해 북한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시장경제 운용이라는 연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특구의 농산물 수요증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입될 경우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특구 배후지에 농산물을 공급할 기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지속가능형 농업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 특구 내외에서 농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시장과 농자재 공급처가 존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협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 3.2. 고령지 채소 생산

### 3.2.1. 사업개요

- 북한의 지형 및 기후 특성을 기반으로 청정 지역에서 고령지 채소를 생산하여 남한에 판매함으로써 북한주민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남한주민은 고품질의 무공해 채소를 소비할 수 있다.

### 3.2.2. 추진방향

- 일차적인 대상 품목은 배추
- 북한지역의 수송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접경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계약 재배를 통해 고령지 채소를 생산
- 고령지 채소의 재배 시기는 일차적으로 여름철을 선택
  - 고령지를 이용할 경우 축성, 반축성, 지연재배가 가능
- 일차적으로는 신선 채소 생산에 초점을 맞추다가 점차 김치 생산 등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 3.2.3. 기대 효과

- 고령지 배추 출하기인 8~9월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의 계약재배에 의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 이 시기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신선채소를 수입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령지 채소를 생산할 경우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 남한은 경사지의 채소 생산 감소에 따라 환경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3.3. 육계 생산 및 가공분야

### 3.3.1. 사업개요

- 현재 북한에는 닭을 사육할 수 있는 닭공장이 많이 건설되어 있으나 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가동이 중지된 곳이 많다.
  - 남한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닭 사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 따라서 남한의 기업인이 북한에 닭 사료와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산된 닭을 반입할 경우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다.
- 다만 북한에서 생산된 닭을 반입할 때 위생검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 북한은 닭을 사육함으로써 유희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내수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한국은 북한 지역에서 닭을 생산하여 반입함으로써 닭 사육

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다만 한계점으로는 북한에서 닭 사료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서 중국 등 외부에서 사료를 계속해서 조달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했을 때 위생검역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3.3.2. 추진방향

- 남북경협에 의해 육계생산을 추진코자 할 경우 현재 남한에서 사육하는 형태의 현대식 양계장, 사료공장, 도계장, 식품가공공장 등을 북한 지역에 패키지로 건설하고 사양 및 관리기술도 함께 이전한다.
- 남한은 시설과 장치 등 자본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작 또는 합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별도로 건설된 사료공장은 경협으로 운영하는 양계장뿐만 아니라 다른 양계장에도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 사료 이외에도 약품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므로 사업 초기에는 이들 재료도 남한 협력사업자가 공급하도록 한다.
- 경협을 통해 생산된 육계는 함께 건설한 도계장을 통해 일차 가공을 한 다음 남한으로 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 남한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할 때 가공단계를 높여 다양한 형태의 닭고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 닭고기를 외부로 반출할 때 철저한 위생관리와 검역은 필수적이므로 남한의 협력사업자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야 한다.
  - 북한산 가금육 반입에 대비하여 2004년 북한산가금육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남한으로 반입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위생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여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

### 3.3.3. 기대효과

- 육계 경협사업을 통해 북한은 남한의 앞선 사육 및 관리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북한의 양계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 현재 북한에서 가동하고 있지 않은 현대식 양계장을 활용하여 육계를 생산할 경우 초기 투자를 대폭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더욱 커진다.
- 북한은 유휴시설과 인력의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남한은 환경부담을 줄이면서 적은 비용으로 청정 닭고기를 생산함으로써 남북한은 상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3.4. 잠업분야

### 3.4.1. 사업개요

- 잠업은 양잠(누에고치 생산) - 제사(생사 생산) - 견직(견직물 및 봉제품 생산)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성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으며 이는 북한이 선호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 북한은 양잠 생산기반이 비교적 양호하며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한국은 양잠과 제사업 기반이 이미 무너졌으나 아직도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견직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를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경협 수요가 높다.

- 일부 기업인 중에는 북한에서 누에고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에 제사 또는 견연사 공장을 설립하여 질 좋은 생사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 견직업체에 공급코자 하는 사람이 있다.
- 대안으로 북한에서 질이 높은 생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이를 견직물 원료로 수입코자 하는 기업인이 많다.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양잠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제사부문의 기술협력도 필요하다.

### 3.4.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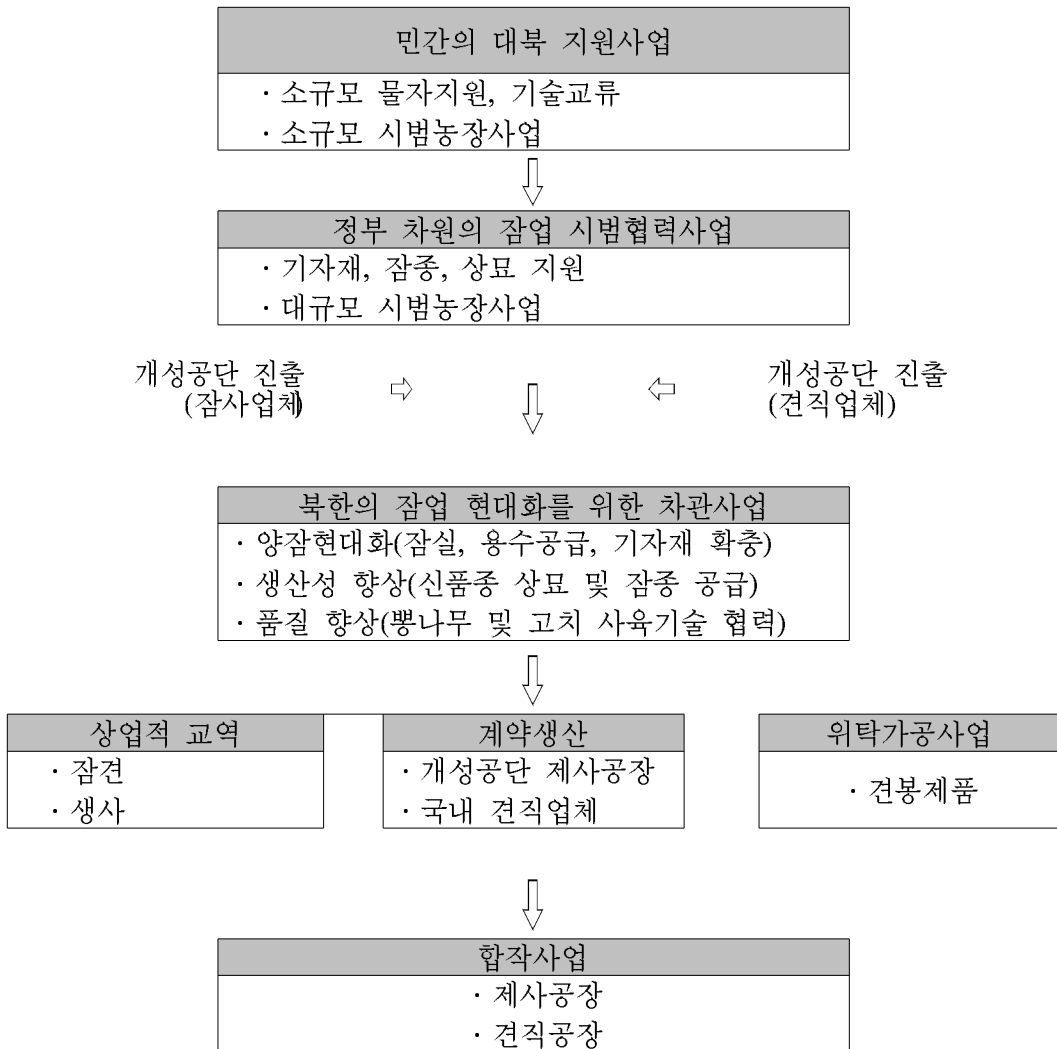
- 한국의 기업인이 (1)북한의 양잠기반을 확충하고 양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고 그 대가로 누에고치 또는 생사를 돌려받거나 (2)개성공단에 제사공장을 설립한 다음 잠업협력을 통해 북한에서 품질이 좋은 누에고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생사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 견직업체에 공급한다면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다<그림 5-3>.

#### 가. 계약생산

- 개성공단에 한국의 제사공장이 진출한다는 가정 아래 제사공장과 북한의 협력 상대방 사이에 누에고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누에고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봄과 가을 두 차례 누에를 생산하는 기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다만 계약재배를 체결할 때는 개별 협동농장이 아닌 전국 규모의 영향력 있는 경제협력기관과의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남북한 경협사업을 주관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주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개성공단 입주 제사공장이 원료 확보를 위하여 북한과 계약생산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 필요한 생사를 구매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림 5-3. 남북한 잠사협력 추진 전략





- 국내 견직공장과 북한의 제사공장 사이의 계약생산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몇 개의 제사공장이 있으나 이마저도 원료확보가 순조롭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생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향후 북한의 잠업기반이 확충되고 생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고품질 생사에 대한 계약생산은 유효할 것이다.

#### 나. 합작사업

- 우선 북한에서 잠사업 합작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원료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국 등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생사 또는 견직물 생산하는 것은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시설이나 경제운용체제를 감안할 때 정상적인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다.
- 합작사업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제사 및 견직물 생산이며 1차 산업인 양잠부문의 합작은 성립하기 어렵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제사공장이나 견직물 시설에 대한 합작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사는 고치 생산이 충분해야 가능하고 견직 시설은 제사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원료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에서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하여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북한에는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소수의 제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생사 생산량이 연간 350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사 시설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앞으로 잠사업 대한 남북한 합작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양잠부문이 정상화되어 충분한 고치를 생산하여 제사 원료로 공급하고 제사공장

이 정상 가동된 후에야 가능하다.

-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어 협동농장의 생산 활동이 1980년대 상황으로 복귀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현재 국제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어 북한 당국이 경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식량 생산에 우선하여 양잠과 같은 특용작물 생산에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기 어렵다. 자원 제약 하에서 협동농장 입장에서도 수입이 적은 양잠에 귀중한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제사공장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직물 생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사회간접시설의 미비와 에너지난까지 겹쳐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기 힘든데다 견직물 제조 시설도 부족하다. 따라서 당분간 견직물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견직물 제조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인이 북한에 합작사업 형태로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 향후 견직물 제조시설에 대한 합작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사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만 할 것이다.
- 중국이 세계 잠사시장에서 생사공급 조절능력을 갖고 있는 한 자국 원료를 사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경쟁력 있는 잠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중국은 공급을 증가시켜 국제시장가격을 낮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국의 잠사산업을 위축시켜 왔다.
- 최근 국제 생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잠견이나 생사 생산을 통해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생사 수출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굳이 견직물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사 수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북한산 생사의 품질이 개선된다면 남한으로 반출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sup>3</sup>

### 3.4.3. 기대효과

- 북한의 산업구조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잠사업 개발 목표를 양잠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향후 북한 경제가 점차 고도화된다면 잠사업의 개발목표를 양잠이나 제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견직이나 봉제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의 잠업개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대략 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1991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제2단계는 IFAD의 잠업개발사업 당시 설정하였던 목표를 원용할 수 있다.
- 잠사업은 타 부문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며 잠사업 중에서도 특히 노동집약적인 양잠은 제사나 견직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더욱 크다. 잠사업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더라도 숙련된 노동력이 확보되어 있고 자연적인 조건만 갖춘다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사업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통일부는 2008년 8월 19일부로 남북한 반출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다. 기존 승인을 요하는 품목 가운데 견사(생사)는 관세율 8% 품목으로 2007년 외국산 400톤이 수입된 바 있으나 수입시 관련법령에 대한 규제가 없고 국내 업체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품목에서 제외되었다.

- 농민소득의 증대효과는 경영규모의 증가, 생산성 증대, 고치가격 상승의 세 가지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향후 북한에서 잠업개발이 추진될 때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경협사업을 통해 견직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원료 개발을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견직물 제품을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3.5. 특용작물분야

#### 3.5.1. 사업개요

- 현재 북한은 연간 2,000톤 이상의 인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삼 재배 적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처가 확보된다면 더 많은 인삼을 생산할 수 있다.
  - 북한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가공기술이 뒤떨어져 있으며 디자인, 포장 등의 기술수준이 낮은데다 국제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 이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수출도 힘든 상황이다.
  -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질 좋은 인삼과 남한의 높은 기술과 판로를 결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경우 남북한 모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식물성한약재 생산 및 가공
  - 북한에는 다양한 한약재가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건조과정을 거쳐 남한이나 중국에 반출되고 있다.

- 만일 북한의 한약재 재배적지에서 남한의 축적된 한약재 재배 및 가공기술을 결합할 경우 한약재의 생산 증대는 물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상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약재는 품질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한 장치와 시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3.5.2. 추진방향

#### 가. 인삼 재배 및 가공

- 북한은 개성을 비롯하여 황해남북도 일대에서 인삼을 널리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 등지로 수출한다.
- 남한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인삼 또는 인삼 가공제품을 홍콩, 대만,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등지에 수출하며 중국 등지에서 원료삼을 수입하고 있다.
  - 중국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인삼 또는 인삼 가공제품을 한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며 북한에서도 연간 50~100만 달러 정도를 수입한다.
- 인삼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경우 인삼의 재배와 가공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 인삼농가의 반발 때문에 북한에서 원료삼을 반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남북한 사이에 경협을 추진한다면 인삼가공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 따라서 인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원료삼의 확보가 관건이므로 인삼의 생산과 가공을 연계하여 경협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 인삼은 4~6년의 재배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가공품의 경우 대부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해야 하므로 판로를 고려하여 경협 규모를 차츰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남북한이 인삼을 대상으로 경협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북측 협력 상대방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인삼사업자가 북한과 경협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심적인 협력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 북한에서도 인삼은 중요한 외환벌이 품목이기 때문에 군부의 무역회사가 취급하지만 표면상으로는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관장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협력주체로 나서므로 경협을 위한 협의 과정이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잦다.
  - 따라서 성공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표면적인 협력주체와 실질적인 협력주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식물성한약재 생산 및 가공

- 1989년 남북한 교역이 재개된 이래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농림산물 중 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식물성한약재이다.
  - 1989~2007 기간 식물성한약재 반입액은 5,872만 달러이며 연평균 반입액은 309만 달러이다.
-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시 핵심적인 문제는 반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과 물품의 안전성이다.
  - 식물성한약재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북한산임이 확인되어야 약효를 보장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한약재를 채취 또는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거나 경협에 의해 북한

현지에서 확보된 한약재를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 일차적으로는 식물성한약제의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안전한 원료 농산물을 생산, 반입하는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 이 경우에도 건조된 한약재를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가공이 필요하다.
- 다음 단계로는 남북경협에 의해 식물성한약재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계약재배에 의해 생산된 식물성한약재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한다.
  - 생산된 가공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중국 등지로 수출 할 수도 있다.
  - 가공 단계나 형태에 따라 건조한약재, 엑기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 가공공장 설립시 가공시설, 저온보관시설, 운송수단, 포장시설 이외에도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실험장비와 검사기술 협력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5.3. 기대효과

- 북한은 인삼 및 한약재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외환을 획득하고 이들 품목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 남한 사업자는 이미 확보된 판매망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 증대는 물론이고 시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 4. 경험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과 지원 방안

## 4.1. 공공 부문 재원

### 4.1.1.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지원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의하면 다음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경제협력사업 대출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3조에서 정한 자
  - 반출·반입자금대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
- 남북협력기금 대출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
  -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유희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 농업, 어업 및 광업 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 남북협력기금은 크게 경상사업(무상지원)과 용자사업(유상지원)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각각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으로 구분된다.
  - 남북 교류협력지원 중 인적왕래 지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금융기관의 손실보전 및 미결제 채권인수



지원 등 경상지출(무상지원)로 처리한다.

-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중 이산가족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은 경상지출(무상지원)로 분류한다.
  - 남북교류협력지원 중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자금은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
  -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중 식량차관이나 경수로사업은 대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형태에 따라 무상 지원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 제사공장을 건설코자 하는 중소기업, 북한과 잠사류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자, 북한과 잠사류 교역을 하고자 하는 자, 북한과의 잠사류 위탁가공사업자, 북한에 잠업 분야 합작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남북협력기금의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북한과의 교역을 추진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받게 되는 경우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 향후 남북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충 및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최근 남북협력을 위한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에 비해 일반예산 증가율이 높은 현상을 보인다.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충을 통해 재정 지출의 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뿐만 아니라 외자 조달, 민간출연을 유도하고 채권발행, 투자기금 모집 등 다양한 형태의 조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남북협력기금의 정비가 필요하다.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용도가 인도적 지원과 경수로 사업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남북교류협력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전체의 21.0%에 불과하며 경협사업자금 대출은 전체 사용 기금의 3.9%에 지나지 않는다(이상만, 2007).

- 기금의 원래 취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경협과 비경협을 이원화하여 기금을 분리하거나 같은 기금으로 운용할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sup>4</sup>
- 남북협력기금의 자금 대출별 지원조건은 <표 5-8>과 같다.
  - 경협 및 반출입 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하고 우선지원 대상 사업은 90%까지 확대하되 담보 또는 신용 대출로 한다.
  - 경협사업은 대출 기간을 8년, 반출입 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 이자율은 국고채의 유통수익율을 기준으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4.1.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경협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북한 지출을 지원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위탁가공교역, 합작사업, 합영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 단순한 물자교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식은 대북사업 추진과정을 계획단계, 확정단계, 실시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표 5-9>.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을 통해 남북사업을 지원하는데, 현재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 운영

4 정부는 2008년 10월 10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핵문제 진전에 대비하여 “북한비핵화계정”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13조). 북한 비핵화 진전시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계정을 신설하고 남북협력사업과 북한 비핵화 사업간 명확한 회계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및 협동화자금 등이 있다<표 5-10>.

표 5-8.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종별	지원한도	이자율	기간	채권보전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소요자금의 80%이내 (우선지원대상90%이내)	국고채 3년물 유 통수익률	8년이내 (거치3년포함)	담보 신용
반출입자금 대출				
▪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	계약금액에서 기수령금액 공 제한 잔액의 80% 이내 (우선 지원대상90%이내)	국고채 1년물 유 통수익률	2년이내	담보 신용
▪ 위탁가공용 원 부자재반출자금	소요자금의 80% 이내 (우선지원대상 90%이내)	국고채 6월물 유통수익률	1년이내	"
▪ 위탁가공용 설 비반출자금	"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	5년이내 (거치1년포함)	"
▪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	반입금액(선급금과 운임, 보 험료 포함)의 80% (우선지원대상 90%이내)	국고채 1년물 유통수익률	2년이내	"

표 5-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북지원 3단계

단계	세부 지원 내용
계획단계	* 상담, 사업타당성 검토, 협력선 알선 및 계약협상 지원 *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기업에 한해 대북사업 제안
확정단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존 지원자금(시설, 운전자금) 연계 지원 * 개별진출기업 :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 공동진출 : 협동화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제도 구비
	* '양도담보 설정대상 제외' 규정으로 대북반출 설비에 대한 신용대출 수행
실시단계	* 북한 현지 경영과 기술지도 및 연수, 판로지원

표 5-10.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

사업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원 한도	비고
구조개선 지원자금	연4.9% (신용대출시 5.4%)	시설8년이내 (거치3년포함) 운전3년이내 (거치1년포함)	업체당 연간 3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5억이내 * 기 대출잔액을 합해 동일기업당 50억 이내	시설 자금의 40% 내에서 운전자금 지원
지식기반 서비스 육 성자금	연5.9% (신용대출시 6.4%)	시설8년이내 (거치3년포함) 운전3년이내 (거치1년포함)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경영안정 지원자금	연5.9% (신용대출시 6.4%)	3년이내 (거치1년포함)	연간 5억원 이내 대출잔액에 따라 차등지원	
협동화 지원자금	연4.9%	시설자금 공동시설 :10년이내 (거치5년포함) 개별시설 :8년이내 (거치3년포함)	지원비율 토지, 건물 : 70-90%이내 기계설비 : 100%이내	3개 기업 이상 공동진출의 경우
	신용대출시5 .4%	운전자금.협업화 : 5년이내 (거치2년포함)	1회 운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 4.1.3. 손실보조제도

○ 손실보조제도에는 ‘남북교역손실보조제도’와 ‘남북경협손실보조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sup>5</sup>

- 남북 교역손실보조제도는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

<sup>5</sup> 정부는 2008년 10월 10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다. 손실보조 제도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전쟁, 내란, 재산몰수 등)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조” 제도 용어를 “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 변경하였다(시행령 제9조).

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 '04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남북경협 손실보조제도는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측당국의 수용, 송금제한, 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非常危險)로 인해 정상영업 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 남북교역손실보조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거래 :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서 반출손실보조와 반입손실보조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피 약정자가 지정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손실보조금 지급책임이 발생한다.
- 손실보조비율 : 손실액 대비 50%, 기업 당 5억원 한도
- 약정체결방법 : 건별 약정 또는 회전한도약정 중에서 선택
- 신청자격 : 신청자와 북한 계약상대방이 각각 과거 남북거래 실적이 있고 “신청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용조사 결과 “약정제한”에 해당 될 경우 약정체결 제한가능
- 손실보조 수수료 : 약정관계 성립 후 기금에 납부해야 약정의 효력 발생, 중소기업의 경우는 25% 할인. 수수료 금액은 약정금액에 손실보조 수수료를 곱한 것으로, 수수료율은 기본요율±할인율/할증율을 적용한 것
- 손실보조금 지급절차 : ①사고발생 통지(피약정자→ 기금) ②사고조사(기금) ③손실보조금 지급신청(피약정자 →기금) ④지급심사 및 손실보조금 지급(기금) ⑤채권회수 의무이행 (피약정자)
- 손실보조금 지급 : 기업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금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손실보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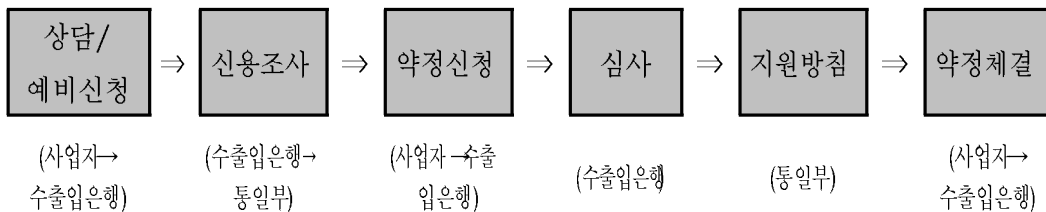
○ 남북교역손실보조제도의 종류와 대상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교역손실보조의 종류

종 목	손 실 보 조 대 상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반출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반입손실보조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 경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자로,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취득 등의 방법으로 북한 내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합병·합작기업에 참여하는 경우
- 손실보조비율 : 개성공업지구 90%(기타북한지역 70%)
- 약정한도 : 기업당 20억원(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조정가능)
- 약정금액 : 약정가액(투자금액) × 손실보조비율
  - ※약정가액 : 손실발생의 최고한도액(약정대상 전체금액)
  - ※약정금액 : 약정가액중 기금이 손실발생을 담보하는 금액(손실보조금 최고한도액)
- 손실보조수수료 : 약정금액 × 수수료율
  - ※ 수수료율 : 기본요율(0.7%) ± 할인/할증율(중소기업 특별할인 25%)
- 약정기간 :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
- 약정절차 :



- 경제협력손실보조의 종류는 <표 5-12>와 같다.
  - 경제협력손실보조에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와 전쟁 등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표 5-12. 경제협력손실보조의 종류

구 분	내 용
수용위험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불능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월 이상의 사업정지
기타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서 파기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월 이상의 사업정지

#### 4.1.4. 개발협력 무상원조

-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크게 증여와 차관으로 나누고 증여에는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 차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을 받게 된다.
  - 무상원조에는 기자재 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조사 등이 있다.
  - 기술협력에는 연수생 초빙, 전문가 파견, 청년봉사단 파견, 의료단 파견 등이 해당된다.
  -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하고 있다.
- 만일 북한과 시범농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ODA 무상원조 사업 중 프로젝트형 사업에 해당된다.

- 프로젝트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발굴, 준비, 심사, 실시, 평가 과정을 거친다.
- 아직까지 대북 농업개발사업에 대해 ODA 무상원조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ODA 무상원조사업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4.1.5.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 EDCF 기금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경제협력자금 분류상 공적 개발원조(ODA)에 속하는 양국 간 유상경제협력기금인 차관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 이 자금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차관 형태로 공여하지만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 기금지원 대상국은 개발도상국 중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한정한다.
  - 특정조건이란 ①경제개발 단계, 산업구조 등이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 ②정치, 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③기금 지원을 통하여 경제협력 기반의 구축은 물론 외교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를 말한다.
- EDCF 기금 협력대상 분야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중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고 경제협력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대상 분야로 한다.
  - 당장의 경제협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도 지원 대상이 된다.



- EDCF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에는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기금전대차관, 물자차관, 사업준비차관, 보충용자 등이 있다.
- 개발사업차관은 댐, 발전소, 도로, 공장 건설 등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기자재, 서비스,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조달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 기자재차관은 개발도상국의 특정 산업 부문 또는 특정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금전대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육성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물자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지원하거나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양국 정부사이 사전 합의된 물자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주요 물자 중에는 공업자본재, 공업용 원재료, 비료, 농약, 농기구, 기계류 등이 있다.
  - 사업준비차관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경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경제개발사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 보충용자는 지원 방침이 결정된 후 기금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자금 지원 당시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기금지원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 사업시행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 외에도 우리 국민이나 법인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도

상국에 출자하거나 용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1987년에 설치된 EDCF는 2005년 말 현재까지(1987~2005) 농업분야에 대해 3개국 4개 사업에 총 7,8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표 5-13>.
  - 시기별로는 2000년대 이전까지 1건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점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 EDCF 지원사업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며 1987년 이후 EDCF 지원총액의 3.3%, 2001년 이후 지원총액의 6% 수준이다.
  - 농업부문 지원 실적이 미미한 원인은 수원국이 한정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보다는 투자수익율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사업이나 IT분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표 5-13. 농업분야 EDCF 지원자금

연도	국가명	사업명	승인액(백만 달러)	
1996	중국	농업부 종합농업개발	16,933	(20.00)
2001	중국	감숙성 감숙농업대 연구소 건립	2,490	(2.00)
2003	중국	4개성 벼농사 기계화 건설	25,476	(25.00)
2005	앙골라	농업현대화	30,818	(31.44)
계 (4건)			75,717	(78.44)

## 4.2. 민간재원

### 4.2.1. 민간인 모금 및 자체재원

-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NGO)는 지원자금의 많은 부분을 자체 모금에 의해 조달한다.
  - 자체 조달자금에는 자체 재정 수익금, 일반 후원자의 정기 또는 비정기 후원금, 기업 후원금 등이 있다.

- 민간인 모금에 의한 재원은 시민단체의 인도적 또는 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인 모금액에 따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의 취지나 형태에 따라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지원단체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의 경우 자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이 함께 지원사업을 하는 협동사업의 경우 자체 사업비의 2~3배까지 지원을 받는다.

### 4.3. 금융기관 지원제도

#### 4.3.1. 한국산업은행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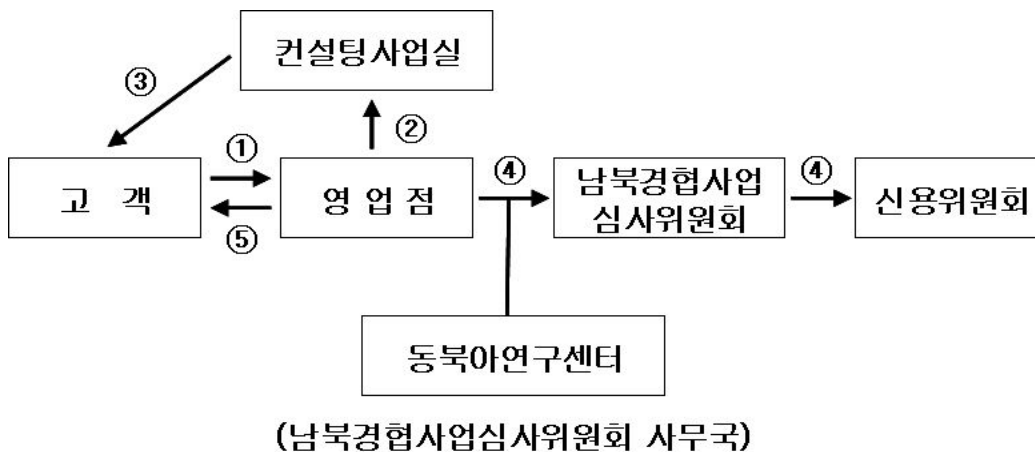
-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으로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은행이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등에 의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중에서 북한 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북한에서 위탁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 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시설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의 두 가지가 있으며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다.
  - 시설자금 대출은 북한지역 사업장 건설 소요자금이나 북한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대출 대상 소요자금의 90% 이내이며 대기업의 경우 80% 이내로 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이다.
  - 운영자금 대출은 북한 사업장의 경상 운영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자금 한도는 북한 사업장 추정 매출액의 40% 이내이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구입자금은 소요액의 80%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산업은행은 북한 소재 투자자산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대출도 허용한다. 만일 국내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금리를 우대. 대출 금리는 원칙적으로 상업적 기준을 적용하되 대북 경험사업 대출은 국내 대출보다 1~2% 정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대출절차는 <그림 5-4>와 같다.

그림 5-4.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대출절차



- ① 용자상담, 차입신청서 제출
- ② 사업성 검토 의뢰
- ③ 사업성 검토 실시
- ④ 승인신청(50억 이하: 남북경협심사위원회, 50억 초과: 신용위원회)
- ⑤ 용자약정 체결, 기표(시설자금: 기성고에 따른 기표)

#### 4.3.2. 한국수출입은행의 청산결제제도

- 국가간 교역에 대해 매 교역대금을 쌍방 청산결제은행의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1년 단위로 그 대차차액을 청산하는 제도이다.

- 주로 구 사회주의국가간 또는 경화가 부족한 시장경제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에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온 제도로 대상품목은 무역의정서 형태로 매년 해당 국가간에 확정된다.
- 교역기업은 매건 교역을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결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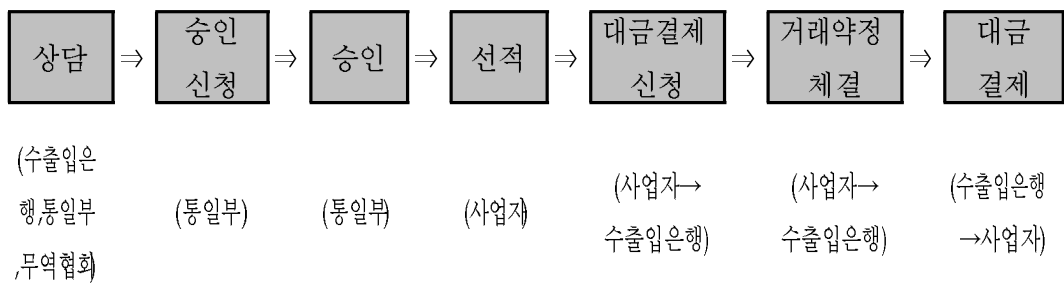
○ 2004년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청산결제거래 내용은 <표 5-14>와 같다.

표 5-14. 청산결제거래 합의내용

구분	합 의 내 용
결제대상	매년 남북당국간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중 합의품목 (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위탁가공 교역은 제외)
결제한도	미화 3천만달러 범위내
신용한도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금액인 미화 450만 달러 이내 (이자율 연 1%)
청산계정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에 각각 상대방 은행이름으로 청산 계정 및 이자계정을 개설
결제통화	미달러화 (남북당국의 합의에 따라 다른화폐로도 가능)
결제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2004년에는 시행일 ~ 12월 31일까지)
거래원칙	기업들간 계약방식으로 거래(쌍방 경제단체가 거래희망기업들을 지원)
통지방식	SWIFT, 전화, 팩스 등
절차	· 반출자 은행의 반출대금청구 요청에 따라 반입자 은행이 대기통지서로 통보하면 각각 상대방 은행의 이름으로 된 청산계정에 대기 및 차기 · 청산계정 기장명세서는 분기별로, 이자계정 기장명세서는 연도별로 상 호확인
청산	청산계정의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
기타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Correspondent Agreement) 체결 (합의서 발효 후)

○ 반출거래에 대한 지원방식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원방식 : 수출입은행은 조선무역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지시서(대기통지서)를 받은 후 반출자 앞 대금결제
- 지원절차



## 제 6 장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1.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 상생과 공영을 통한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의 발전
  -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협을 통해 남북한이 상생과 공영을 도모한다.
  - 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
  - 경협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 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한의 특수성이 아니라 국제 관행에 맞춘 경협을 추진한다.
- 남북한 통일 기반의 조성
  - 경협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sup>6</sup>

<sup>6</sup>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 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213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남북경협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57.3%로 나타나 2007년의 72.5%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지

- 성공적인 경협 수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북한내 개방의 필요성과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 경협환경이 미비할 경우 개발지원과 경협을 연계시킴으로써 경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경협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되 수익성 원칙을 경협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정부가 추진하는 경협은 포괄적 상호주의에 입각하되 경협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 정부는 민간의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 핵문제 해결 등 정세변화에 따라 경협의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 북한의 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을 추진한다.
  - 국제사회의 참여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참여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
- 경협 추진방식의 선택 기준
- 호혜성 :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
  - 현실성 :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

---

원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 51.8% 보다는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경협이 인도적 지원보다는 통일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연합뉴스, “10명중 5명만 통일 필요...회의감 증대,” 2008. 11. 27.)



- 정당성 :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업
  - 지속성 :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업
  - 연관성 :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 경협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경협에 대한 우선순위는 효과성(efficacy)과 효율성(efficiency) 양 측면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지금까지 경협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 사업에 대한 평가도 효율성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 앞으로 경협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 이외 남북한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북한의 개방과 개방, 북한내 파급효과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남북경협의 원칙

- 남북경협은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회생 및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 지배계층의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군비 증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가급적 피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북한 경제의 회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협을 추진한다.
- 경협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북한이 자급자족적 경제 운용에서 벗어나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
  - 북한이 시장화를 통해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을 추진한다.

- 경협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 농업협력을 통해 남북경제의 상생 성장을 도모한다.
- 경협은 경제성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경협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 경제성이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먼저 지원과 교류를 통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뒤 추진한다.
- 재정부담 능력
  - 당국자 사이의 경협은 정부의 재정 부담능력에 따라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한다.
  - 민간의 경협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경협환경을 조성하고 경협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의 경협 활성화를 지원한다.
-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한다.
  - 북핵 문제의 진전, 남북한 관계의 진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경협의 단계와 속도를 조절한다.
- 국민적 합의
  - 정부의 재정이 소요되는 경협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 정부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경협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때는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다.
  -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3. 농수산 분야 경험 활성화를 위한 전략

#### 3.1. 경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

- 남북한 사이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국민적 합의이다.
-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목적에 맞는 농업협력사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설정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의 목표는 인도적 상황의 개선, 식량 증산, 농업기술 교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북측 협력 상대방의 경제적 자립, 농촌지역 생산 및 생활기반 복구 등을 들 수 있다.
-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사업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성과를 확인해가며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이든 경험사업이든 투하되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 셋째, 협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협력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협력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협력 당사자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측 참

여자에게는 북한 체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켜 남북 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 3.2. 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 전략

- 제1단계 :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주변 환경이 현재 상태로 지속
  -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협력사업 추진
  -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
  - 지원사업과 경협사업의 연계 가능성 확인
  - 농업기술 및 전문가 교류
- 제2단계 : 북한의 핵 불능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 도출
  - 생산기반 복구 시범사업
  - 산림복구 시범사업
  -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 특구 중심의 경협사업 추진
  - 시범적 투자협력사업 추진
  -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 확대
  -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기 합의된 경협사업의 착수
- 제3단계 : 북핵 문제 해소
  - 북한 농업복구사업 협력
  - 농업분야 경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경협사업 추진
  - 민간기업 중심의 경협사업 본격화

### 3.3. 수산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 전략

#### ○ 제1단계

- 남북 수산협력사업 마스터플랜 작성
- 단계별 협력사업 도출과 타당성 검토
- 북한 동해 수역에 대한 남한어선 입어사업
- 북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유통가공 등 기반시설 지원
- 남북한 수역의 수산자원 및 해양 생태 정보 교류
- 수산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충

#### ○ 제2단계

- 어패류 양식 및 가공 협력사업
- 북한 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어선 수리소 개선, 시범 유통가공단지 조성, 어로용품 공급 지원
- 해양 포유류의 보호 등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조사사업
- 러시아 해역 등 해외어장 진출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 ○ 제3단계

- 수산분야 수역관리를 위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 동서해안 해역의 어족 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 공동 구축
- 북한의 수산업 인프라 개선사업
- 수산 분야 남북한 공동 연구

## 4.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4.1. 제도적 측면

- 농수산물 생산의 특성상 남측 협력사업자의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 특히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남북한 사이의 농수산물 검역 및 방역에 관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 남북한 사이의 검역 및 방역체계의 확립
  - 북한의 검역 및 방역 시설, 장비의 현대화,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통관
  - 농수산물 검역 및 방역을 위한 정보의 교류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및 위생기준의 설정
  - 남북한 교류협력이 개시된 지 20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수축산물의 품질 및 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협사업자 사이의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 경협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아직까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한 번도 분쟁해결을 시도해본 적이 없으므로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농수축산물은 품질 표준화가 매우 어렵고 체제가 다른 남북한 사이에 위

생기준을 설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수산 분야의 경협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 특히 북한산 농수산물은 한 곳에서 대량생산이 어려운데다 생산 및 재배 기술의 표준화가 미비하여 매번 동일한 품질의 생산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남측 경협사업자의 주장이고 보면 빠른 시간내 품질 및 위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경협을 활성화시키고 북측으로서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 ○ 원산지 확인 제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산 물품의 반입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되어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런 점 때문에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북측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남북한 사이에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해당 품목의 북한내 생산 실적, 수출입 실적, 재배 및 생산 방식,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 ○ 경협 4대 합의서의 구체화

- 남북한이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합의내용인 투자보장, 이중과세, 상사분재해결, 청산결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면서 경협에서 중요한 문제인 남북한 사이의 기업창설, 이윤분배, 기술자 및 근로자 채용, 기업의 경영과 조직, 기업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남한에 상응하는 기업조직과 운영 관련 법제를 갖추지 않고 있으

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따라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 남북경협 연락사무소의 상설화
- 남북한은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서로의 합의에 의해 2005년 10월 개성공단 지역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를 설치하였으나 2008년 3월 북측의 요청에 의해 남측 인원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경협을 위한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접촉경로가 막히게 된다.
  -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상설사무소 개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남북한 사이에 경협을 추진코자 할 경우 많은 경우 대북 지원 민간 단체를 통해 협의를 하는 실정이므로 가능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경협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연락사무소의 제도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
-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활용
-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차입이자 지출에 기금의 많은 부분이 잠식당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규모를 확충한다.
  -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식량 차관이나 비료의 무상지원에 편중 사용되고 있으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협사업에 대한 유무상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 기금을 남북경협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의 개발도 필요하다.



○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 지원제도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 북한 현지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전문가 파견 기술지도 및 북한 근로자의 노무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 신규 경험 추진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 경험 추진 기업은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을 위한 협의 단계부터 컨설팅 지원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북한 내륙지역 투자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의 완화가 요구된다.<sup>7</sup>

## 4.2. 실천적 측면

○ 원활한 수송을 위한 육상운송로 확보

- 남북한 사이의 물자 수송은 현재 대부분 해상수송로를 이용하고 있다. 해상수송로를 이용할 경우 운임과 물류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남북경협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특히 부피가 큰 상품의 위탁가공의 경우 물류비용이 생산원가의 40%, 판매가격의 10~15%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운임과 물류비를 낮출 수 있도록 육상운송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

7 정부는 2008년 9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차주 변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에 투자하려는 소액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면제 투자금액을 현재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차주를 국내 모기업에서 개성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금융 편의성을 확대하였다. 다만 기금대출채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성법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국내 모기업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 물류비 절감은 남북경협을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므로 당장 육상운송로 확보가 어렵다면 해상운송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 북한의 농수산물 물류시설, 장비
  - 농수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가치에 비해 무거우며, 쉽게 부패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농수산 분야의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그런데 북한의 물류시설과 장비는 낡고 낙후되어 있으므로 주요 출입지역만이라도 물류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물류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는 체선기간의 단축, 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물류비를 인하하고 물류시간을 단축할 수 할 수 있으며 이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 특히 수산분야는 사업지역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경협 추진이 요구된다.
-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기구의 역할 증대
  -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한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1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하부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관련

경협사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회의에서 합의된 분과위원회 이외 향후 경협 가능성이 높은 분야까지 포괄하여 남북경협을 위한 포괄적인 협의기구로 둘 필요가 있다.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단순히 남북한 사이의 경협에 관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도 중요하므로 관련 정부 부처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협관련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
  - 관련 정부부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경협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농수산업 개발지원과 경협의 연계를 통해 경협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수산업도 전후방 산업이 잘 연계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전후방 산업이 연계되지 않는 경우 기업인은 경협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면서 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
  - 북한은 농수산업은 경협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개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부는 농수산업 개발지원을 통해 경협을 위한 최소한도의 인프라와 기술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과 경협을 연계시킨다.
  - 배후지역과 연계한 경협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대북 농업개발지원은 금강산과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배후 지역과 연계한 경협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경협을 정착시킬 수 있다. 경협 대상 사업도 이들 배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삼, 김치, 양잠, 양돈, 양계, 한약재, 버섯 등이 유망하다.

- 북한은 경제체제의 특성상 다 품목 소량 생산의 농수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형태의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협사업자는 영세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농수산 분야의 이러한 경협환경을 고려하여 경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계약재배와 연계한 경협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 북한산 농산물을 국내에 직접 반입하고자 할 때 1차 가공품 형태로 반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 농업을 대상으로 경협을 추진하려면 일차적으로 계약재배를 통해 안전한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

#### 4.3. 남한의 대북정책과 정책 추진

- 2000년 6월 남북 정상이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다양한 분야의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 당국자 사이에 대화가 추진되었다.
  - 후속적으로 추진된 대화로는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적십자회담 등이 있다.
  - 이러한 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 남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 남북경협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

- 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등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하였다.
-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남북 해군 사이에 교전이 일어났고 2003년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동안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우선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 이 정책은 2007년 10월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결실을 보았다.
  - 그렇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미진한 가운데 합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000년 중반 이후 농수산 분야의 경협도 과거에 비해 활발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남북경협의 많은 부분이 바람직한 형태의 경협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미흡

한 가운데 추진한 적극적인 교류협력, 일방적인 대북 지원, 국제적 공조가 미흡한 가운데 추진된 우리민족끼리의 협력, 남북협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 조성 태도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일방적인 생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2008년 2월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위에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충한다는 대북정책을 채택하였다.
  -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상생의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진행 중인 경협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서 경협을 추진한다.
  - 새로운 경협사업은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 비핵·개방·3000의 실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실현한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며 북한은 남북경협 관련 사업에 대해 계속 부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협 자체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 북한은 2008년 3월 개성공단 내 있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의 남측 관계자 일부를 내쫓은데 이어 11월에는 개성을 출입하는 인력과 물자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12월 1일부터는 개성관광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상주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며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아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 현 시점에서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 알 수도 없고 이러한 사태가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도 없으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남북경협에 관한 정책은 대북정책 전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대외정책과도 연계가 된다. 향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남북관계가 되었던 국제관계이든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과거의 정책이나 합의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와 합의에 의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 경협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협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 가능한 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대북정책은 특히 국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똑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의견의 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 경협이든 지원이든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정한 다음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남북한과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금이

나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원칙과 행동지침은 북한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우리 국민에게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남북협력을 추진할 때 남한의 모든 사업주체가 북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4.4.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경협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 북한은 개방 확대하기 위해 무역법 등 여러 가지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국제규범과 동떨어진 제도의 적용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 최근 북한이 개혁 정책에서 점차 후퇴하고 있는 점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 경제교류협력은 원칙적으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실행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남북협력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시장이 존재해야 하고 시장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
  - 최근 북한이 종합시장을 축소하고 이를 농민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경협을 통해 북측 사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좀 더 효과 있고 효율적인 경협이 가능하다.
  - 북한의 경직된 체제하에서 남측 경협사업자는 북측 사업자에게 경협을



통해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3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협사업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중단이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 북한의 제도적 미비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경협사업을 추진할 때 가능한 세밀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경협사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북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북한의 경협 상대방이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시찰이나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측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교육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경협사업에 참여하는 북측 관리자를 중국 등지에서 훈련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 4.5.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여건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이는 향후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6자회담 참여국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특히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국은 이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으로써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 향후 북한의 핵 불능화 성과가 가시화되면 북미간 외교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북미간 무역에 있어서도 북한을 최후혜국 대우를 함으로써 무역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북경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으로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북핵 문제에 관해 이들 두 나라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외교적 협력을 강화할수록 남북관계의 안정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최근 북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북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 북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북핵 불능화 진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한에 대해

중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독 일본만이 대북 중유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은 비난보다는 인내와 설득을 통해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도록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에 900만 달러 규모의 북한지원협력기금을 설치한 것은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북한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세계은행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며 이를 특별신탁기금으로 확대하고 비회원국인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 특별신탁기금을 마련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금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이 세계은행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이 경제 재건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관리의 해외 연수가 필요한 만큼 제3국을 통한 위탁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럽을 통해 북한 관리들에 대한 시장경제 및 금융 연수가 여러 차례 추진된 만큼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부록 1

---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평화 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의 원칙에서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를 진행하기로 한다.

① 공동어로 수역과 공동어로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② 공동어로에서의 어로기간, 어선 수 및 어구이용, 입어료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서해상의 정해지는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수산물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해 우량품종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어장진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최영건

## 부록 2

---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

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응조

## 부록 3

---

###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명시된 농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양돈협력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2.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한다. 구체적인 제공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쌍방의 이행기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은 양돈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5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기혁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북측 단장 김영철

## 부록 4

---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⑪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

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

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

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리 수  
국 무 총 리 수  
한 덕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일  
김 영 일

## 부록 5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 및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부총리 전승훈

## 부록 6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박 현 출

북남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리 만 성

## 부록 7

###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농업협력(양돈)사업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총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측에 상시사육두수 연산 1천톤 규모(5,000두)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 등의 품목 및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측의 「농업성 축산관리국」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차관 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3.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한다.

수송비용과 관련하여 육로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의 경우 지

정된 항구까지의 수송은 남측이 부담한다.

그외 북측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4. 사업기간(2년) 내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는 남측이 보장하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금액에 포함시킨다.
5. 북측은 남측인원들의 북측지역내 체류시 통신·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6.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8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배광복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북측 단장 전호현

## 부록 8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환경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에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전문가 교류 등 그 운영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을 착수하기로 하고 규모 및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방문 기간 중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전염병통제를 위해 예방약 및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를 제공하며, 남북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들과 관련한 실태조사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북측 제약공장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료의약품을 제공하며, 설비 현대화와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설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하며, 사업기간 중 필요한 기술실무진의 현장방문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2. 남과 북은 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2008년 2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 3/4분기 안으로 평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자료교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2008년 4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

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문 창 진

북남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리 봉 훈

## 참고 문헌

- 고재모 외. 1999. 「남북한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영경. 2007. “북중 경제협력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본 남북경협의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11 no. 1. 북한연구학회.
- 권태진 외. 2006. 「대북 잠사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수. 2007.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균. 2002.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윤. 2006. “최근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 정비의 의미와 남북경협.” 「통일경제 Briefs」 Vol. 6. 현대경제연구원.
- 김영훈 외. 1999. 「남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 외. 2004.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모델 개발 연구」.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 김영훈 외. 2007.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성욱. 2003.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 남성욱. 2006.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협력 방안.”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 동명한. 2003.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환경」 연구보고서 2003-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성환우 외. 2006.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하의 가축질병 및 방역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승철. 1997. “남북한간 경협의 원칙과 준칙.” 「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양대학교.
- 심지홍, 김강식. 2003.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경상논총」 제28집. 한독경상학회.
- 양문수. 2007.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국토」 vol. 311



- no. 0. 국토연구원.
- 양문수. 2005.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9 no. 2. 북한연구학회.
- 이기희. 2003.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 이상만. 2002.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경협 현황 및 정책과제.” 「동북아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이상만. 2007. “6.15선언 이후 남북 경협현황, 경협기금 운용평가 및 정책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11 no. 1. 북한연구학회.
- 이승철. 2003.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vol. 27 no. 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영훈. 2006.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vol. 10 no. 2. 북한연구학회.
- 이종근. 2006. “남북경협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경제 Briefs」 Vol. 4. 현대경제연구원.
- 정정길 외. 2000.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장 추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권태진. 2001. 「농작물 종자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동호. 2001.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 조영기. 2001.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협활성화의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5 no. 2. 북한연구학회.
- 주성환, 조영기. “남북한의 산업별 경제협력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vol. 6 no. 1. 북한연구학회.
- 주진열. 2008. “남북경제협력의 국제법적 측면: 법과 정치.”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 최수영. 2001.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통일연구원.
- 최수영 외. 200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통일연구원.
- 최승환. 2005.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와 남북경협의 운영방안.” 「국제거래법연구」

- 제1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 최장호. 2007.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 통일부. 2008.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통일연구원. 2008.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 한국은행. 1999.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이와 시사점」.
- 한국산업은행. 2001. 「중국의 개혁 전략과 성과」.
- 홍성걸. 2007. 10. 8 “남북한 수산부문 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성걸. 2008. “북한 동해수역 입어협상의 선결요건과 추진방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성걸. 2008. 11. 12 “수산분야 남북협력 및 투자진출 방향.” 남북 농림수산 분야 교류협력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홍진욱. 2007. “남북경제협력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2008-

남북한 농수산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 대책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12.  
발 행 2008.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ㅇㅇ인쇄사  
02-739-3941~5 <http://www.>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